明代 醫政史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金基郁 · 朴炫局 · 金正浩*

A Study of the History of Medical Administration in Ming(明) Dynasty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Kim, Ki-Wook · Park, Hyun-Kuk · Kim, Jeong-Ho

Basic summary of the medical administration : First of all *Ming* dynasty was at its last stage of dynastic era that the politics reached absolute autocracy. The influence of centralized power lead to systematical medical administration management system that was generally formed around *Tai Yi Yuan* (太醫院). Criticizing treatments via shamanism with supernatural powers and advent of strengthening medical concepts were steps toward a new phase. Medical education in regional areas showed drastic development and preventative medicine on epidemics as well as relief work succeeded to a certain amount. Overall *Ming*(明) dynasty has somewhat of a growth in some areas keeping the basics of *Tang*(唐) · Song(宋) and *Yuan*(元)'s medical administration, however basically, unique contribution was not shown much. But on the other hand, measures such as common medical system, reserving incompetent doctors, positioning medical officers by the amount of contributions, paying salary with medicine instead of currency brought losses on medical development.

Key Words : History of Medical Administration in *Ming*(明) Dynasty, *Tai Yi Yuan*(太醫院), Medical policy, Management of medical policy, Relations in medical policy and medical development, Evaluation of medical policy.

Ⅰ. 序 論

본 논문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형성한 秦始皇으로부터 魏晋南北朝, 劉宋, 隋唐五代, 南宋까지 醫政史의 연구[1] 결과와 최근의 연구 자료[2] 등을 바탕으

* 교신저자 : 김기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054) 770-2664. kkw@dongguk.ac.kr

1) 金基郁 외3人. 秦漢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2). 朴炫局 외3人. 魏晉南北朝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2). 金基郁 外3人. 兩宋時期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3). 金基郁 外3人. 隋唐五代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4). 金基郁 外1人. 遼金元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7. 20(1).

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www.kci.go.kr

로, 明代의 醫政史에 관한 연속적인 연구이다.

明代 醫政의 기본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 시기는 왕조사회의 말기단계로 당시 정치는 절대 전제주의까지 다다랐다. 집권사상의 영향으로 太醫院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의정 관리 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다. 신선무술을 비판하고, 의약관념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면이 출현하였다. 지방의학교육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역병의 예방치료와 의약구휼 등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하자면 명대 의정은 唐·宋·元 의정의 기초를 지키면서 어떤 방면은 발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독특한 공헌은 많지 않았다. 이와는 상반되게 판에 박힌 世醫제도, 박약한 醫生의 대우 및 헌납을 통한 醫官 임명, 약품으로 봉급을 대신하는 등의 조치는 의학발전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明代의 醫政史에 관하여 정치개요, 의약정책, 의정에 관한 관리, 의약정책과 의학발전과의 관계, 의정에 대한 평가 등의 방면으로 연구를 개괄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本 論

1. 明朝의 정치개요

이 시기는 명 태조 洪武 원년(1368)부터 思宗 崇禎 17년(1644)까지 277년 동안이다. 元은 順帝에 이르러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국가기강이 흔들려 이미 정부는 통치를 유지할 힘을 잃게 되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朱元璋은 농민봉기의 승리를 기반으로 원을 타도하고 한족의 왕조를 세웠다. 明朝 초년에 주원장은 원 말기 농민봉기를 교훈으로 삼아 屯田制를 실시하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지주들을 공격하는 등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피해를 입은 농업을 회복시키고 발전시켰다. 이와 동시에 명 정부는 수공업, 상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冶鐵, 瓷器, 방직 등이 나날이 번성하였고 특히 造船業이 발달하였다. 16대 崇禎에 이르러 안으로는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밖으로는 만주족이 세운 淸이 위협하였다. 숭정 17년(1644)에 청나라 군대는 李自成이 북경을 함락하는 기회를 틈타 吳天桂의 지원 아래 中華의 주인이 되었다.

명대 초기의 정치제도는 모두 원의 옛 제도를 답습하여 中書省이 정무를 총괄하고 樞密院이 병권을 잡았다. 이후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여 洪武 9년(1376)에 태조는 중서성을 承宣布政使司로 바꿀 것을 명하고 민정과 재정만을 관리하고 군정은 주관하지 않았다. 그런 연후에 1천여 년 동안 실행되었던 丞相제도를 폐지시켰다. 이는 황제의 권력을 대대적으로 강화시켜 중국 역사상 절대 전제주의인 군주정체가 출현하게 되었다. 승상제도의 폐지는 새로운 중앙권력의 핵심인 內閣이 출현하였다. 내각은 위로는 황제의 裁可를 맡고 아래로는 六部를 맡았다. 육부는 옛 제도를 답습한 것으로, 즉 吏, 禮, 戶, 工, 兵, 刑이다. 태의원은 禮部의 제약을 받았고 조직편제 방면에 있어서 또한 吏部의 견제를 받았다. 명대의 지방정권은 일반적으로 省, 府(州), 縣 세 등급을 설치하였다. 명대의 사법기관은 중앙에 刑部, 都察院, 大理寺 등이 있었다. 명대에 관리를 임용하고 선발하는 중요한 3가지 방법으로는 學校, 科擧, 薦擧가 있었다. 요컨대 명대의 정치는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봉건전제주의인 중앙정권을 강화하였고 의약관리 측면에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났다.

2. 明의 의약정책

1) 神仙·巫에 대한 제재 조치

명대에 자연과학은 이미 크게 발전하였다. 통치자들의 사상수준도 과학기술과 문화발전의 영향을 받아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神仙·巫·장생불사술 등에 대해 비판, 배척, 제재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의학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제거하였다.

1995. 朴炫局 외 2人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 一中社. 2004. 洪元植 외1人.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李良松 외1人. 中國傳統文化與醫學. 廈門大學出版社. 1990. 王漢昌. 中國古代政治制度史略. 北京. 人民出版社.

www.kci.go.kr

개국 황제인 朱元璋은 제후들 가운데 신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모두 소집하여 "神仙之術, 以長生爲說, 而又謬爲不死之藥以欺人, 故前代帝王及大臣多好之, 然卒無驗. 且有服藥以喪其身者, 蓋由富貴之極, 可以長生, 何故四海之內, 千百年間曾無一個得其術而久住於世者. 若謂神仙混物, 非凡人所能識此, 乃欺世之言, 切不可信. 人能懲忿室欲, 養以中和, 自可延年有善, 足稱名垂不朽, 雖死猶生, 何必枯坐服藥, 以求不死, 況萬無此理, 當痛絶之"[3]라고 일깨웠다. 주원장이 신선과 巫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명대에 기본적인 정책을 제정하는 방향이 되었다.

成祖 朱棣가 永樂 5년(1407) 5월에 남쪽을 정벌할 때 병사들이 무더위에 질병에 걸리는 것을 염려하여 使者를 보내 향을 피워 기도하였지만 이는 빠른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다. 신선·무술과 같은 것에 대해 그는 믿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壬申에 朱棣는 侍醫와 양생의 도를 언급할 때에 "人但能淸心寡欲, 使氣和體平疾疢自少. 如神仙家說服藥導引亦只可少病, 豈有長生不死之理. 近世有一種疲精勞神佞佛求壽, 此又愚之甚也 "[4]라 하였다. 이 말은 朱棣의 내심 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成祖도 신선·무술을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명초 신선·무술에 대한 太祖와 成祖의 비판은 이후 계승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宣宗 이후 명 정부는 의식적으로 신선·무술에 대해 투쟁을 전개하였고, 또한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제재를 가하였다. 선종 때 大理寺에서 보고하길 汾州 백성들은 무지하여 의사가 용약하여 효과가 없자 화를 내고 그곳 사람이 다른 의사를 구하여 주술을 하여 죽게 하였는데, 법에 따라 참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宣宗이 "醫術本在活人, 不能其術, 乃爲邪術殺人. 然咒咀亦豈能殺, 但其心當誅, 誅之如律"[5]하라고 하였다. 正統 원년(1436) 8월 庚午에 河南 布政使 李昌祺는 "近者禁約僧尼誠爲厚俗首務, 比見河南各府縣衛所有男婦自稱端公師婆, 托神惑衆, 人有疾病者, 不事醫藥, 惟飮符水以故死常八九, 傷人壞俗有甚. 僧尼乞嚴加禁治, 再犯及邀請客隱者悉罪之. …… 上嘉納之. 命行, 在禮部會官議行."[6]하였다고 하였다. 成化 10년(1474) 5월 戊申에 "上諭都察院臣曰: 翼因愚民捏造妖言, 扇惑人心, 屢犯刑憲. 雖以榜禁而寔頑之徒不改前非, 犯者愈衆, 宜申明禁例, 再揭榜示衆. 今後宮吏軍民僧道人等, 但有收藏妖書, 勘合等項, 限一日以裏盡行燒毁, 與免本罪. 敢有仍前捏造, 收藏傳用惑衆者, 許諸人赴官首告. 正犯處死, 全家, 發煙瘴地而充軍. 首告得實之人, 量給官錢充賞, 優免雜泛差役三年"[7]하라고 하였다. 成化 18년(1482) 7월 癸未에 "泰州民李文昌上疏言自稱魯遇異人, 授以鉛汞煉銀之術. 上命中官監試之, 凡五閱月竟不就. 上曰文昌不務安分妄爲欺罔, 錦衣衛其杖之五十, 發回原籍, 令所在官司嚴加鈐束"[8]하였다. 宣宗, 英宗, 憲宗은 신선·무술을 제재하는 조치에 힘을 실어 주었다.

명대에는 신선과 妖道를 불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丹藥의 제조에 대해서도 이단시하여 엄격히 금지시키고 위반하면 죄를 면치 못하였다. 孝宗 弘治 10년(1497) 2월 甲戌에 內門大學士 徐溥 등이 보고하길 "…… 頗聞有以修齊設醮燒丹煉藥之說 …… 夫齊醮之事乃異端惑世求利之術, 聖王之所必禁. 宋徽宗崇信道流科, 流儀符錄一時最盛. 及金兵圍城, 方士郭京猶誕稱作法. 卒使來與播遷社理失守 …… 至若燒煉之事, 其害尤慘. 蓋金石之藥性多酷烈, 一入腸腑爲禍百端. 唐憲宗藥發至疾, 遂殞頂身, 雖殺柳泌, 何救於事 …… 遠邪佞之人, 斥誣罔之說, 則聖德日新, 聖政日理, 億萬年太平之業可保無虞矣. 奏入, 上嘉納之"[9] 하였다. 武宗 正德 4년(1509) 12월에 어떤 신하가 황제에게 "天下王府有無籍之徒, 假以燒丹煉藥爲名, 往來誑惑者, 鎭巡予爲禁約, 各村所遣人除領者勿限, 餘俱嚴限遣歸.

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明實錄·太宗永樂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96.
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1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33.
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明實錄·宣宗宣德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59.
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英宗正統實錄 卷21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42.
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宣宗成化實錄 卷128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837.
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宣宗成化實錄 卷229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331.
9)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孝宗弘治實錄 卷122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749.

www.kci.go.kr

如在違延續及潛在住於京有所營求者, 照例參究. 王府凡遇疾病喪葬修齊設醮一切禁革. 至於僧尼道士女冠巫祝之流, 尤宜痛絶勿客. 出入違者, 許撫按官擒治, 並追究誘引之人罪之. 寺觀廟宇, 徒耗民財, 無益於事. 自今各府不修弄請額. 上批曰 : 諸事旣議處歸審, 凡累朝舊制及見引例, 其申明禁約. 郡王, 將軍而下卒無嗣及郡王進封親王者, 其餘支止許奏請奉祀, 不得營求請封及紙嗣名目. 親郡王生母授封者, 從簡葬祭. 各王府勿客僧尼女冠出入宮禁及私建寺觀, 違者, 承奉長史以下俱罪不宥, 餘皆如議, 仍諭諸鎭巡官知之."[10]하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명대 황제와 대신들은 신선·무술 등을 비판하고 이에 따라 제정한 각종 제재 조치로 의학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명대 의학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 민중의 의약관념을 강화

명대 정부는 신선·무술을 비판함과 동시에 백성들의 의약관념을 강화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 정부는 사당을 건축하여 역대 명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조치를 취하여 의약의 영향을 확대시켰다. 명초에는 "以三月三日, 九月九日通祀三皇. 洪武元年(1368), 令以太牢祀. 二年(1369), 命以句芒, 祝融, 風後, 力牧左右配 : 兪跗, 桐君, 僦貸季, 少師, 雷公, 鬼臾區, 伯高, 岐伯, 少兪, 高陽十大名醫從祀, 儀同釋奠. 四年(1371) 帝以天下郡邑通祀三皇爲瀆, 禮臣議 : 唐玄宗嘗立三皇五帝廟於京師, 至元成宗時乃立三皇廟於府州縣, 春秋通禮, 而以醫藥主之, 甚非禮也. 帝曰 : 三皇繼天立極, 開萬世敎化之原, 汨於藥師可乎? 命天下郡縣毋得褻祀. 正德十一年(1516), 立伏羲氏廟於秦州少 …… 嘉靖間(1522~1566), 建三皇廟於太醫院北, 名景惠殿. 中奉三皇及四配. 其從祀, 東廡則僦貸季, 岐伯, 伯高, 鬼臾區, 兪附, 少兪, 少師, 桐君, 雷公, 馬師皇, 伊尹, 扁鵲, 淳于意, 張機十四人. 西廡則華佗, 王叔和, 皇甫謐, 葛洪, 巢元方, 孫思邈, 韋慈藏, 王冰, 錢乙, 朱肱, 李杲, 劉完素, 張元素, 朱彦修十四人. 歲仲春秋上甲日, 禮部堂上官行禮, 太醫院堂上官二員分獻, 用少牢. 複建聖濟殿於內, 祀先醫, 以太醫官主之. 二十一年(1542), 帝以規制秋隘, 命拓其廟."[11]하였다. 天啓 7년(1627) 정월에 "以廣臣魏忠腎捐貨茸理鄭城藥王廟, 上心喜悅, 命四方商賈依廟開一切租稅盡行蠲免. 所有香火錢糧, 差內臣張添祥等前往經管, 共同登記收貯, 以備修理焚祝之資, 府縣官不得幹預."[12]하게 하였다.

명대의 여러 황제들은 三皇廟와 藥王廟 등 제사지내는 곳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太醫院의 관리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여 의약을 중시하였다. 嘉靖 2년 2월, 隆慶 원년 2월, 隆慶 3년 10월, 天啓 2년 11월 등 嘉靖, 隆慶, 天啓시기에 황제가 친히 太醫院의 관리를 파견하여 先醫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명대에 사당을 세워 先醫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중시한 조처는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명대의 황제가 의약을 중시하고 先醫의 사상과 행위를 존중하였음을 나타낸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의약의 영향을 확대시키고 백성이 의약을 숭상하는 관념을 강화시켜 의학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3) 의약율령의 계승과 발전

명대에 의약과 관련된 형법율령은 기본적으로 唐宋의 것에 따랐다. 예를 들어 禦藥의 제조, 독약매매, 음식위생보건, 庸醫의 살인, 죄수의 의약위생관리 등의 방면에 규정된 조항들은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고, 어떤 조항은 글자만 고쳤다. 이러한 조항에 규정된 형량은 당송 때에 비해 약간 가볍다. 명대 의약율령과 당송 의약율령의 주요 차이와 새롭게 추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약조제에 착오가 있을 때 형량이 경감되었다. 당송 때에 어약 조제에 잘못하여 본방에 의거하지 않고 封題에 착오가 있으면 絞刑에 처하였다.

1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武宗正德實錄 卷58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435.

11) 張廷玉 等奉勅撰. 明史 卷50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p. 297*664~665.

1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嘉宗天啓實錄 卷75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301.

www.kci.go.kr

그러나 명대에는 杖刑 100대로 규정하였다. 요리에 선택이 정확하지 못하면 당송 시기에는 1년의 徒刑에 처하였으나 명대에는 장형 60대로 규정하고 하였다. 禦膳을 만드는데 食禁에 잘못을 범하면 당송에서는 主食은 絞刑하였으나 명대에는 장형 100대로 규정하였다. 禦藥과 禦膳 제조에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수나 착오에 대한 형벌 역시 경감되었다.

둘째, 庸醫와 의사를 사칭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새로운 규정 두 가지를 추가시켰다. 하나는 용약과 침구를 本方에 의거하지 않아 죽었을 경우 다른 의사가 약물과 穴道를 판별하여 만약 고의로 해치려는 의사가 없으면 과실치사로 죄를 묻고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고의로 本方을 위반하여 치사케 하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고의로 용약하여 살인한 자는 참수형에 처하였다(大明會典 168권 刑10 律例9). 또 다른 하나는 의사의 이름을 사칭하여 부역을 대신하게 한 경우(군을 따라 출정하는 등)에는 각각 장형 80대에 처하고, 그 돈은 관에서 몰수하였다(대명회전 166권 형8 율례7).

셋째, 감옥의 보건위생 방면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은 당송의 것을 답습하였다. 이밖에 약간의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다. 명 太祖 洪武 원년에 죄수의 연령이 70세 이상과 15세 이하이거나 폐질을 앓는 범인은 散監에 거주하게 하였다. 永樂 13년(1415) 여름 6월 甲寅에 "命法司自今武職宮犯杖罪以下系獄者, 有疾許出就醫藥, 著爲令."[13]하게 하였다. 기타 죄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질병이 있으면 의약을 공급하여 "如有虐害而死者, 聽從家屬告理官吏抵罪 …… "[14]하게 하였다. 嘉靖 2년(1523)에 獄醫를 두도록 하였다. 太醫院에서 의생 1명을 선발하여 提牢所로 가서 진찰하게 하였다. 징수한 벌금에서 매년 은12냥을 의생의 고용비용으로 지불하였다. 매월 刑部에서 지급하는 쌀 7鬥로 생활하고 6년의 임기를 다 채운 후에는 吏部에서 冠帶醫士의 직위를 수여받았다. 법률적으로 많은 조항이 있었지만 명대의 감옥은 어두운 면이 많았다. 특히 명 중엽 이후에 환관이 전권을 잡고 廠衛提騎가 전국으로 퍼져 옥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갈수록 많아졌다.

넷째, 法醫와 공소시효 방면은 기본적으로 송과원의 규정을 계승하였지만 일부 발전도 있었다. 예를 들어 檢屍와 외상은 대부분 관리가 사건에 따라 집행하였고 검사가 부실하면 법률적 제재를 받았는데, 고의로 즉각 검사하지 않아 시신이 변질되거나 혹은 직접 가서 감시하지 않고 吏卒에게 맡기는 경우이다. 初檢과 復檢한 관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시체의 상태가 같아야 하고, 손상의 경중을 바꾸고 시체의 상처를 증감시키고 치사원인이 불명하면 正官은 장형 60대에 처하였다. 만약 돈을 받고 고의로 검시를 부실하게 하면 벌을 받았다. 공소시효 방면에도 새로운 규정을 두었다. 구타로 상해를 입힌 경우 즉 수족, 기타 물건, 칼, 끓는 물이나 불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한정하였다. 지체를 꺾거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하였다. 만일 상처로 사망하게 된 것이 사실이면 살인죄를 적용시켰다(대명회전 권169 형11, 율례10).

4) 약물공납과 봉급으로 환산한 조치

명대에는 약물공납의 규모가 매우 컸다. 정부는 천하에서 생산되는 약제는 모두 산지에서 공납하도록 규정하였다. 태의원이 사용하는 藥餌는 모두 南京의 예부가 각지에서 오는 생약을 받아서 제조하였다. 기타 사방에서 공납된 것을 수납하여 저장하는 약품은 모두 內府에서 받아 관장하였다. 중앙에서 받아 관장하는 전국적인 공납 약물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였다. 永樂 연간(1403~1424)에 규정된 수량이 55,474斤이었다. 嘉靖 초기(1522)에는 모두 264,227근이었고, 가정 13년(1534)에는 약재관리를 백분율로 기준하면 90%는 실물로 구입하고 나머지 10%는 銀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17년에는 또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규정하였다. 萬曆시기(1573~1619)에 수집한 약재는 24,9581근이었다. 전국에서 약재를 바치게 한 조치로 대량의 약재가 중앙으로 집결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약재의 품종들이 점차 갖추어

1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97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607.

1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孝宗弘治實錄 卷158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972.

www.kci.go.kr

지게 되어 약물학의 총결에 일정한 작용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다.

명대는 국내에서 대량의 약재를 공납 받은 것 이외에 또한 외국에서 공납 받거나 수입하였다. 洪武 26년(1393)에 외국약물의 수입방법을 규정하였다. 蘇木, 胡椒, 香臘 등 약물 만 개 이상 수입할 경우 선박이 福建, 廣東 등지에 도착하면 현지의 布政司에서 都司와 按察司 등의 관리가 회동하여 화물을 검사하고 봉인하여 보관하였다. 외국사신이 보낸 것을 골라 중앙에 그 목록을 보고하고 국왕에게 보내는 약품을 제외한 화물은 관급하는 가격으로 수매하였다. 포정사에서 각 衙門이 회동하여 화물을 계량하고 수량을 점검한 다음 禮部 委官을 거쳐서 戶部 都察院에 문서를 보내고 委官이 差督人과 함께 계량하여 입고시켰다. 成祖가 북경으로 천도한 뒤에도 약재의 수입은 여전히 남경 예부의 委官이 남경의 태의원과 회동하여 검수한 뒤에 內府의 廣積庫에 보내 수장하였다. 명 말기에 국가의 세력이 점차 쇠퇴하고 사방에서 들어오던 약재의 수량과 품질이 모두 떨어졌다.

명대에는 공납 받은 약물의 수량이 많았고 또한 정부가 약물을 맹목적으로 수입했기 때문에 태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약물을 제외하고 대량의 약재를 쌓아두었다. 永樂 22년(1424)에 북경의 문무관에게 봉급 대신 胡椒와 蘇木을 지급하였다. 소목은 한 근에 8貫에 해당하고 호초는 한 근에 16관이었다. 이때부터 명대에 약물로 녹봉을 대신하는 사례가 시작되었다. 宣德 9년(1434)에도 여전히 이와 같았다. 그러나 호초는 이 시기에 한 근에 100관이었고 소목은 한 근에 50관이었다. 正統 원년(1436) 윤6월에 남경과 북경의 문무관, 萬全都司, 大寧都司, 北直隸에 소속된 관군의 봉급을 환산하여 주었는데 매 해 상반기에는 돈으로 지불하였고 하반기에는 호초, 소목으로 지불하였다. 약물로 봉급을 대신하는 방법은 관리의 봉급을 사실상 깎은 것이다. 顧炎武는 『日知錄』에서 "先是折俸鈔米一石, 鈔二十五貫, 漸減至十貫. 是時鈔法不行, 鈔一貫值二, 三錢, 是米一石, 僅值錢二三十文. 至是又折布, 布一匹時估不過二, 三百錢, 而折米二十石, 則是米一石僅值十, 四五錢也. 自古百官俸祿之薄未有如此者."[15]라 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약물을 환산할 때에 폐단이 난무하였다. 예를 들어 萬全都司의 각 衛所에는 味가 淺淡하고 작고 여린 蘇木으로 바꾸었고, 후추를 삶아 매운 맛을 우려내거나 밀가루 반죽에 철가루와 모래, 흙을 섞어 중량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되자 관리와 병사들은 봉급이 너무 적어 사실상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었다.

명대에는 공납하는 약물의 수량이 증가하였고 약물로 봉급을 대신하여 통화 팽창을 조절함으로써 관리의 봉급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약물 관리에 혼란이 야기되었다. 어떠한 각도에서 말하건 간에 이러한 조치는 의약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5) 醫生의 관리에 관한 정책

(1) 의생의 선임

① 世醫 제도

명대에는 元朝가 직업과 직위를 나누어 정한 것에 관한 규정을 답습하였고 또한 더욱 엄격하게 分行分戶와 자식이 부친의 업을 승계하는 行戶 세습제도를 제정하였다. 『大明會典』에 "凡軍・民・醫・匠・陰陽諸色戶, 許各以原報抄籍內定, 不許妄行變亂, 違者治罪, 仍從原籍."[16]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若詐冒托免, 避重就輕者, 杖八十. 其官司妄准脫免及變亂叛籍者, 罪同."[17]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의 직업을 엄격하게 제한시켰다. 世醫제도는 醫戶의 세습 이외에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 태의원 의학생은 일반 醫戶의 자제들 중에서 선발 한다. 둘째. 의호에게 직계 자손이 없으면 친족인 형제나 조카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 가르쳐서 補任한다. 의호는 모두 籍에 올리고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한다. "凡醫藥之人, 禮部務必備知, 以憑取用."[18]하였다.

---

1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宣宗成化實錄 卷97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633.
16) 徐溥 等奉勅撰. 明會典 卷20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617*247.
17) 徐溥 等奉勅撰. 明會典 卷134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618*359.
18) 徐溥 等奉勅撰. 明會典 卷95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617*878.

www.kci.go.kr

② 추천 제도

洪武 26년(1393)에 규정하길 의생이 부족하면 대부분 世醫 집안에서 보충한 것 이외에 전국에서 찾아 선발하고, 의생은 태의원 堂上官이 지휘하여 시험을 통하여 수용하였다. 그 방법은 전국 府·州·縣을 방문하여 천거한 사람을 의관으로 임명하는데 모두 태의원에 보내 시험을 치며 관원 한 명을 딸려 보내 시험을 보게 하였다. 시험에 합격하면 吏部에서 선별하여 임용하고 시험에 붙지 못하면 본적지로 돌려보냈다. 원래 추천한 관리도 처벌을 받아야 했다. 명대에 선발된 의가로는 惠帝때에 戴思恭, 成祖 때에 盛寅, 吳訥, 孝宗 때 吳桀, 세종 때 許紳, 慶歷시기에 李時珍이 있었다. 그 중에 戴思恭, 盛寅, 吳訥은 후에 太醫院使가 되었고, 이시진은 楚王府 奉祠正에 올랐다. 왕도에 징집된 의사는 임용 여부에 따라 명예나 대우 등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밖에 임용된 의관은 황제를 직접 시봉할 수록 승급하거나 혹은 파면 당해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일부 의관은 안정된 생활을 위해 禦藥房에 근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弘治 연간(1488~1505)에 吳桀은 왕도로 징집되어 禮部의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우수한 성적을 얻은 의사는 어약방에 들어가고 다음은 태의원에 들어가고 성적이 좋지 못한 의사는 돌려보냈다. 오걸은 尙書에게 징집된 의사들이 10여 년 동안 차례를 기다리다가 일단 돌아가면 零落하게 된다고 간하였다. 이에 오걸은 어약방을 사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태의원에 들어가길 원하였다. 명대에 의사를 찾아 천거한 조치를 통하여 의생 집단을 보다 확장시켰다.

③ 헌납에 의한 보임

명대에는 세의제도와 추천하여 선발하는 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돈이나 재물을 헌납 받아 의관에 보임하는 폐습이 출현하였다. 어느 정도 의료기술이 있는 사람이 정부에 돈을 헌납하면 시험을 면제받고 의관의 대오에 들어갈 수 있고, 관리를 보충할 때 자격과 경력이 더 오래된 다른 사람보다 앞서 직위를 맡을 수 있었다. 이러한 풍조는 憲宗, 孝宗, 武宗 시기에 성행하였다. 헌종 成化 15년(1479) 9월 壬午에 陝西를 순찰한 右副都禦史 阮勤은 "陰陽·醫學·僧道·官府有老疾及不謹者, 黜退別選. 陰陽醫生僧道照例納米補缺 …… ."[19]한다고 보고하였다. 관례에 따른다고 한 것은 즉 같은 해 9월 甲子에 "有缺陰陽·醫學·僧道等官, 許令納米二百石經送吏部入選, 免其考試."[20]한다는 규정이다. 효종 弘治 7년(1494) 10월에도 "仍令陰陽醫生納糧免考授職 …… ."[21]하였다. 홍치 10년(1497) 10월에 "陝西, 河南, 山西所屬州縣納米一百石或銀六十兩者得選補陰陽·醫學·僧道官."[22]하였다. 正德 7년에 헌납 조례가 12항이나 되었다. 이로써 명대에 헌납으로 임관된 풍조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의생의 수준을 떨어뜨렸고 쓸데없는 관원을 대량으로 증가시켰으며 어느 정도 의학발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2) 의생의 대우

명대는 의생에 대한 대우가 왕조사회 가운데 가장 낮았던 시기였다. 특히 태의원에 임직한 醫士는 그 대우가 더욱 낮았다. 永樂 이전에는 태의원 의사는 월급이 없었고 영락시기(1403~1424)에 가정이 있는 자에게 매달 쌀 5말, 가정이 없으면 3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생활고로 인하여 몰래 달아나기도 하였다. 宣德 5년(1430) 7월에 태의원 院判 韓敘는 의사들은 도망가고 醫丁들은 복역을 우려하여 나서지 않는 자가 700여 명이며 여러 번 재촉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 때문에 각 州와 縣의 장관에게 협조를 구하여 도망간 의사를 수색하였다. 엄격한 기율을 확립하기 위해 일부 도망간 자들에 대해 종종 처벌을 내렸다. 嘉靖 28년 7월 丁亥일에 "禮部尙書徐皆參奏, 內殿供事醫士吳夢龍等 …… 曠違職役, 私回原籍, 請究治 …… 夢龍等悉革役爲民."[23]하였다. 상술한 사실들은 태의원에서 임직한

19) 梁峻 編著.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138.
2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宣宗成化實錄 卷194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165.
2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孝宗弘治實錄 卷94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597.
2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孝宗弘治實錄 卷130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787.

www.kci.go.kr

일반 醫生・醫士는 대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종종 직무를 벗어나 도망하여 민간에서 의업을 행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직책을 민간인으로 바꿔 그들이 계속 의업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도망친 의사의 생활환경이 더욱 궁해졌다. 이와는 반대로 헌납으로 보임된 의관들은 관리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생활이나 대우가 일반 의사보다 높았다. 이밖에 매월 받는 녹봉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충분한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곤궁하여 도망가지는 않았다. 헌납에 의해 보임된 의관은 순전히 그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3) 의생의 관리

명대 憲宗, 孝宗, 武宗시기에는 의생의 선임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헌납으로 의관에 보임되는 것이 유행하여 憲宗 成化 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 성화 21년(1485) 3월 乙丑일에 南京 吏部尙書 陳俊合 등 여러 대신들이 20건의 사안에 대해 황제께 보고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태의원의 의사와 의생이 남아돌아 이전보다 2할을 줄이고 넘치는 인원은 原籍으로 돌려보내 노역을 시키도록 건의하였다. 吏部는 이를 중시하여 해결책을 내어 놓았지만 2년 후 皇位가 바뀌어 弘治시기에는 이러한 풍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成化 때보다 더욱 성행하였다.

명대의 의생 관리는 正德시기에 이르러 호전되기 시작하여, 嘉靖 후기에 이르러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정덕 16년 6월 壬寅일에 吏部가 正德 연간에 승급되고 등용된 것에 대해 고칠 것을 주청하였다. 이에 태의원 少卿 등의 관리인 朱天麟 등 127명을 파면하고 강등시켰다. 嘉靖 28년(1549) 7월 丁亥일에 禮部尙書 徐皆參이 “聖濟殿供事人役, 本部先年題准三年一次考選送入, 自十八年以後, 考試之法不行, 而內殿供奉之醫間有乞恩傳補而入者矣. 乞補醫士猶恐不稱, 況供奉內殿可徒徇其陳乞而不論其術業乎? 請自今爲始, 本部年終通將照院醫士, 醫生嚴加考試. 分爲三等. 一等者留侯, 聖濟殿缺人送入供事. 其餘悉遵舊制, 仍令太醫院堂上官協心鈐束. 醫官不許違曠職業, 其有逃回患病日久不能供役者, 每季雖報查處. …… 近年, 禮部違例濫收各項人役, 大壞政體, 卿卽將醫士並儒士通事, 但系未經題請考試, 假以訪保才學爲名及有罪過冒收者, 通檄具奏已階查考. 太醫院未經考試醫士時候泰等二十四人 …… 詔革役問罪有差.”[24]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정리를 통해 남아도는 의생을 정리하고 태의원 의생의 소질을 대체적으로 제고시켰다. 嘉靖 43년(1564) 9월에 禮部에서 또한 “淸查太醫院冒濫官生應除名者四十二人, 應除戶者一百六十一人. 因言今中醫士俱以父祖世業代補或在外訪保醫官, 醫士以充. 其已收在院者, 仍有敎習考選升黜之例. 蓋祖宗愼重醫學如此, 後因夤緣於進者, 多擧保收充日濫, 遂將前例一切停止. 自今淸查之後, 請將本院醫籍新生納丁, 每三年保結報州, 其餘並不得私收一人. 其是在子弟及寄籍侯補醫丁, 有父祖收充年月世次可憑者, 悉聽本部委官敎習, 仍按月按季考試一次. 不到者量責, 二次除名, 王棋除戶, 年終同院醫生送部考慮量加賞罰. 三年大考, 分三等. 一等補醫士; 二等補醫生; 三等發院學習. 又三年再考, 新補照舊役一體甄敍, 兩次不堪收補者, 發爲民. 納銀吏目必須三考, 類考. 一等方准同在院醫士, 遇缺考送銓選納銀冠帶例. 該收考醫士亦必經三年類考方准挨次拔差. 某槩院醫士終歲考, 醫業無成者, 量費或住支月糧. 三年大考, 一等, 原系醫士無冠帶給冠帶; 原在內殿供事者升俸一級, 俱各侯內殿缺人, 該院於各科內挨次呈部收補. 二等: 原系醫生與充醫士食糧; 原系醫士無冠帶者, 給冠帶; 原在內殿者, 不准供事. 三等, 原有冠帶者不准冠帶; 原支品級俸者, 降俸一級; 支雜職俸者, 降充冠帶, 醫士食糧七鬥. 醫士降醫生, 醫生住支月糧. 俱降, 醫生發回該院專供鉈碾之役. 其禦醫吏目員缺, 將原在內殿供奉及考居一等人員, (補)禦醫於吏目內. 已經九年考滿者, 吏目於醫士內(選), 內殿供事六年, 司禮監三大營及刑部會同館當差九年者, 送部再考銓補良醫. 大使員缺, 於二等內考補. 如年資米及或術業平常則寧虛缺不補. 荒疏太甚者, 參奏革黜

2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世宗嘉靖實錄 卷350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172.

24) 林堯俞 等纂修. 俞汝楫 等編撰. 禮部志稿 卷89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598*603.

www.kci.go.kr

及起補差回補考等項, 俱照節年事例以實擧行. 其承行官吏有翫法作弊者, 從重究治, 得旨允行."[25]할 것을 주청하였다. 가정시기에 두 차례의 비교적 큰 정리를 거쳐 의생의 관리가 강화되었다. 명조 후기에는 가정시기 두 차례 정리를 통해 채택한 조치에 따라 의생을 관리하였다.

6) 方藥의 반포와 유행병에 대한 조치

(1) 방약의 반포

통치자가 자신과 황족, 대신의 의료보건을 중시한 것은 각 왕조의 공통된 규율이다. 민간에게 의방을 반포하거나 약물을 내리는 조처는 각 왕조마다 정도가 다르게 행해졌지만 대부분 역병이 유행할 때였다. 명대 황제들은 역사적으로 황제가 백성에게 의방을 반포하고 의약을 내린 전통을 계승하여 역병이 발생할 때 방약을 내리는 조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의방을 반포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正統 9년(1444) 10월 癸丑일에 襄瑗王 孫爌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고 궐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齒疾을 앓아 이빨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변방에 있는 방약이 백에 한 둘도 없으니 황제가 은사를 내려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요청하였다. 백여 가지의 약과 60부에 이르는 의서를 구했으나 대부분 異方雜說이고 金石之劑였다. 황제가 명하여 仁孝황후에게 陰騭에 관한 두 책과 약성이 화평한 것을 주도록 하였다. 황제는 의약을 요구한 것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濟民의 각도에서 능동적으로 방서를 반행하기도 하였다. 嘉靖 23년(1543) 10월 壬午일에 황제는 "皇考躬集醫方選要一書, 仰體天地生德, 壽衆至仁之心. 歲久傳布未廣, 卽重錄梓行兩京各省, 以宜濟民之化. 複以獻皇帝禦制外科經驗方. 命禮部重加校錄, 一體刊出"[26] 하라고 명하였다. 嘉靖 24년 3월에는 禮部에서 新刊醫方選要 등의 의서를 봉증하자 황제가 직접 열람하고 하부 기관에도 내려 보내었다. 가정 40년(1560) 12월에 "辛巳詔: 重刻前禮部尙書胡淡欖所進衛生易簡方書傳布天下. 淡書永樂間進報禮部, 上好醫藥, 置一部幾案, 問時加檢閱, 間有脫簡. 諭禮部繕印全帙進覽時, 故板亡失過半矣. 禮部乃請購民間善本重刻, 以廣其傳, 詔可."[27]하였다.

명조 황제는 약물을 하사할 때 대신 등 공을 세운 신하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특히 주의하였다. 그 원인은 국가 대신의 건강이 정권의 안정과 큰 관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永樂 9년(1411) 7월 己丑日에 吏部尙書 겸 詹事府詹事 塞義가 背癰을 앓자 황제가 어의 劉觀에게 왕진을 명하고 '속히 좋은 약을 투여하고 자세히 살펴 병의 심천과 무슨 약을 썼는지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에 劉觀은 병증은 얕고 좋은 약을 전했으니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르기를 "勿謂正淺歧不足慮, 宜謹視之. 又諭之曰 : 醫者視人病皆當如救焚溺溺, 毋憚寒暑幕夜. 況爲國家療一大臣, 人貴賤不一, 譬如木有可爲榱桶者, 可爲棟梁者. 六卿, 朕股肱之臣. 蓋棟梁者, 爾能療之使安, 亦是有功於國, 不可怠忽. 是曰 : 遣中官賜義鈔一千貫, 且諭義曰: 有疾之人能靜定其心, 亦易得瘥, 須戒勞煩也."[28]라 하였다. 이로써 황제가 국가 대신의 건강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대 전반에 걸쳐 황제가 대신에게 의약을 하사한 기록은 매우 많아 英宗시기만 47차례에 이르러 이것으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2) 埋葬을 통해 유행병을 예방

元末에 빈번한 전쟁으로 다시 대량의 주검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생존 환경에 영향을 끼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疫癘의 유행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명대 초기에 사회가 안정을 되찾자 명 정부는 인력을 동원하여 부패한 시신과 유골을 거두어 매장하기 시작하였다. 洪武 초에 태조는 中書省에 "往者四方爭鬥, 氏不得其死者多矣. 中原草莽遺骸遍野, 朕聞之側然於心. 宜追人循曆水陸悉收瘞之."[29]

25) 林堯俞 等纂修. 俞汝楫 等編撰. 禮部志稿 卷89文淵閣四庫全書 • 史部 • 職官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598*603.

2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世宗嘉靖實錄 卷291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925.

2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世宗嘉靖實錄 卷504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832.

2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77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495.

www.kci.go.kr

할 것을 명하였다. 태조가 명을 내린 이러한 조치는 “仁及朽骨, 聖王之善政”이라 칭송되었다. 이는 과도한 칭찬이지만 환경을 개선하고 유행병을 예방하는데 주효하였다. 동시에 명조 대대로 유행병을 예방하는 귀감이 되었다.

成祖가 태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그가 통치한 22년 가운데 적어도 永樂2년, 8년, 13년, 21년 4차례에 걸쳐 조령을 내려 관원을 파견하여 조직적으로 잔해를 거두었다. 영락 2년(1404) 정월 乙丑日에 성조는 耿孝 등에 명하여 “分詣鄭村壩等處收親骸骨十餘萬聚瘞於北山之麓. 封樹其墓而嚴禁樵牧, 仍遣孝祭之. 上制文勒石 …… 昭示久遠 …… .”[30]하게 하였다. 한 번에 십여만 구의 시신을 매장하였는데 이는 유행병 예방에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성조 이후에 宣宗, 英宗, 憲宗, 世宗 등이 선왕의 뜻에 따라 여러 차례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선종은 宣德 7년, 9년, 11년 세 차례에 걸쳐 조령을 공포하여 버려진 주검을 매장하도록 하였고 또한 도굴을 엄금하였다. 또한 五城을 지키는 군대와 大興, 宛平 등의 현에 명하여 강과 늪을 순찰하면서 유기된 시신을 보면 즉시 매장하도록 하였다. 명대 황제들이 조령을 내려 시행한 이러한 조치들은 전적으로 유행병 예방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작용을 하였다.

(3) 역병의 유행과 대책

명대 정부가 방약을 반포하고 주검을 거두어 매장한 조치는 각도에 따라서는 유행병 발생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위생조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유행병의 발생은 면하기 어려웠다. 명대 277년 동안 기록된 유행병은 적어도 30차례에 이르렀다. 역병으로 죽은 사람은 모두 178,898명인데, 이는 永樂 8년에 邵武에서 죽은 12,000戶 와 역병으로 죽은 기록되지 않은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明史』,『明實錄』의 기록에 근거하여 명대의 역병발생상황을 아래와 같이 표 1로 나타내었다.

29)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太祖洪武實錄 卷55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70.

3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5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pp.19~20.

역병의 만연에 대해 명 정부가 택한 일련의 조치는 주로 아래와 같이 개괄할 수 있다.

① 의약 지급

역병이 유행할 때에 명 정부는 의관을 파견하여 병세를 살펴보고 惠民藥局에서 약물을 발급하였다. 嘉靖, 萬曆 시기에는 이러한 정책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가정 20년(1541) 5월 丁酉에 “禮部左侍郎孫承恩會京師疾癘請給散藥物以救民困苦. 上曰 : 頃聞疫氣流行, 民多罹瘥, 朕甚憫焉. 其令太醫院差官順天府措置藥物, 設法給惠. 上又親檢方書制爲‘濟疫小飮子’方須下所遵用, 仍命禮部刊行.”[31]하였다. 황제가 친히 방서를 검토하여 방역 처방을 창제한 것은 고대 유행병을 防治한 역사에 있어서 최초이다. 이로써 嘉靖황제가 유행병을 막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萬曆시기에도 유행병을 막으려는 조치가 강력하였다.

만력 5년(1587) 5월에 “以京城疫氣盛行, 命選太醫院精醫分撥五城地方診視給藥. 仍每家給與銀六分, 錢十文 …… ”[32]하였다. 6월 戊寅에는 禮部에서 “奉聖諭施藥救京師災疫, 卽於五城開局, 按病依方散藥, 復差委祠祭司署員外郎高桂等五員分城監督, 設法給散. 隨於五月三十日據中城等兵馬司造冊呈報. 五城地方給散銀錢. 共散過患病男婦李愛等一萬六百九十九名. 口共用銀六百四十一兩九錢四分, 錢十萬六千九百九十文. 五城會齊俱於五月二十一日給散, 一切病變委沾實惠. 太醫院委官禦醫張一龍等造冊呈報. 自五月十五日開局以來, 抱病就醫問藥給藥日計千百. 旬月之外, 疫氣已 解. 五城共醫過男婦孟景方等十萬九千五百九十

31) 林堯俞 等纂修. 俞汝楫 等編撰. 禮部志稿 卷65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598*105.

3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神宗萬曆實錄 卷186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182.

www.kci.go.kr

諡號	중국 기년	서기	유행상황
成祖	永樂6	1408	정월 江西의 建昌, 撫州, 福建의 建寧, 邵武에서 작년부터 정월까지 역병으로 죽은 자가 78,400여 명이었다. 7월에 강서의 廣信府와 玉山, 永豊 두 현에서 역병으로 죽은 백성이 1,790여 명이었다.
	永樂8	1410	登州, 臨海 등의 州와 縣에서 정월부터 6월까지 역병으로 죽은 자가 6,000여 명이었다.
	永樂9	1411	河南, 陝西 역이 발생
	永樂11	1413	5월에 浙江의 烏程 등지의 3개 현에서 역병이 돌았고 남녀 합쳐서 죽은 자가 10,500여 명이었다. 6월에 湖州의 3개 현에서 역병이 돌고 7월에는 寧波, 玉縣에서 역병이 돌아 죽은 백성이 9,100여 명이나 되었다.
	永樂12	1414	2월에 湖廣, 武昌 등의 府, 通城 등의 縣에서 民疫이 돌았다.
宣宗	宣德9	1434	12월에 역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이어졌다.
英宗	正統9	1444	겨울, 紹興, 寧波, 台州에 瘟疫이 크게 돌아 다음에까지 계속 만연하여 죽은 자가 34,000여 명이었다.
代宗	景泰4	1453	겨울, 建昌府에 속한 현에서 큰 역병이 돌아 죽은 사람이 8000여 명이고 武昌, 漢陽에서 역병으로 죽은 자가 만여 명이었다.
	景泰6	1455	4월에 西安, 平涼에서 역병이 돌아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
	景泰7	1456	桂林에 역병이 돌아 죽은 자가 2만여 명이었고 湖·廣·黃·海縣에서 봄과 여름에 온역이 크게 돌았다.
英宗	天順1	1457	順天 등지의 府와 蘇州, 遵化 등의 州와 縣에서 봄과 여름에 瘟疫이 크게 돌아 한 戶에 8~9명 혹은 6~7명이 죽었고 …… 전 가족이 역병에 걸려 돌보는 사람이 없고 전염이 끊이질 않았다.
	天順5	1461	4월에 陝西성에서 역병이 돔
憲宗	成化6	1470	12월에 河間, 天府, 眞定, 保定 …… 기근과 역병이 발생.
	成化7	1471	5월에 京城에 흉작으로 백성들이 역병에 걸려 죽은 자가 많았다.
	成化11	1475	8월에 福建省에 큰 역병이 돌아 江西省까지 퍼져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孝宗	弘治14	1501	11월, 江西 贛州府 …… 각 현에 瘴癘가 다발하여 아침에 병들면 저녁에 죽었다.
武宗	正德2	1507	湖·廣·靖州 등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역병이 돌아 죽은 자가 4천여 명이었다.
	正德8	1513	江西에 瘟疫이 유행하였다.
	正德12	1517	10월에 泉州에 大疫이 발행
	正德16	1521	6월에 北直隸 山東, 河南 …… 가뭄이 들고, 福建 福州 등의 府에 가뭄과 역병이 유행하여 府縣의 관리가 죽은 자가 40여 명이었고 군인과 백성들은 셀 수 도 없이 많았다. 9월에 陝西에 온역이 크게 유행하였다. 군대와 백성 중에 죽은 자가 2500여 명이었다.
世宗	嘉靖1	1522	2월에 陝西에서 大疫이 발생
	嘉靖2	1523	南京에 대역이 발생하여 軍民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嘉靖4	1525	9월에 山東에 역병이 유행하여 죽은 자가 4,128명이었다.
	嘉靖20	1541	5월에 京師에 역이 발생.
	嘉靖33	1554	都城 내외에 大疫이 발생하여 주검이 길을 메웠다.
	嘉靖44	1565	京城에 기아와 目疫이 발생.
神宗	萬曆10	1582	4월에 京師에 역병이 발생.
	萬曆15	1587	5월에 京師에 또 역병이 발생.
	萬曆16	1598	5월에 山東, 陝西, 山西, 浙江에 가뭄과 역병이 발생.
思宗	崇禎16	1643	京師에 역병이 돌았는데 2월부터 9월까지 유행하였다.
참고 : 표 안에 자료는 모두 明實錄과 明史에서 나온 것이다.			

표 1 명대 역병 발생상황 일람표

www.kci.go.kr

名口. 共用過藥料一萬四千六百六十八斤八兩. 相應住正仰惟皇上仁無不復, 施有所選, 遂使疲癃之民悉蒙再造之賜. 卽今疫漸消滅, 人遂安寧, 化悉歎爲謳歌, 易箚瘥爲仁壽. 不惟病憊瞻, 依實是蒸黎感悅. 至於給散銀錢, 雖止一次, 而領藥無算, 計其所費實數倍之. 不但貧民得生, 且於平民之家更益普濟, 此天地生成之仁也, 報聞"[33]하였다. 예부의 이러한 보고에 근거하면 만력 15년에 왕도의 역병 통제조치가 비교적 효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왕조사회에 있어서 정부가 유행병을 통제한 역사상 가장 전형적인 모범사례이다. 이 당시 5성에 약국의 개국하여 방역한 것을 기초하여 같은 해 7월 禮部의 보고를 통해 황제가 "設藥局以救荒疫"[34]할 것을 인가하였다. 이 약국이 얼마나 오래 유지하였고 혜민국과 어떠한 관계인지 등은 자료의 부족으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② 세금 감면

역병 발생할 때 명 정부는 醫官을 조직하여 약물을 지급하여 통제한 것 이외에 일반적으로 세금 징수를 정지하거나 별도의 변통 조치를 취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宣德 9년(1434) 5월 戶部에서 "昨江西宜黃縣耆民李崇政等言縣民連年遭疾, 死亡者多. 官田重租艱於徵納, 乞如舊例折納土産布以爲民便."[35]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에 황제는 "舊例折布正以租重故也, 況今民多死亡, 何忍復徵米使生者重困乎? 宜從其言 …… "[36]하라고 윤허하였다. 즉 李崇政의 말에 따라 세금 징수를 변통 처리하였다. 正統시기에 이르러 유행병이 발생한 지역 백성의 조세 등은 기본적으로 면제받았다. 정통 10년(1445) 7월 甲申에 "浙江道監察循史黃裳言浙江紹興寧波, 臺州三府屬縣自去冬以來瘟疫大作, 男婦死者三萬四千餘口 …… 然死者所負租稅宜爲蠲免, 病與饑者宜加賑濟. 上謂戶部臣曰 : 薄賦斂恤饑民貧乃王政之急務, 卽遣人馳令布按二司官如裳言行之, 不可徒事虛文."[37]하게 하였다. 정통 12년(1447) 6월 庚辰에 또한 "免浙江寧波府象山縣疫死人戶秋糧一百八十四石有奇."[38]하였다.

景泰시기에도 역병이 발생한 지역 백성의 세금 감면 정책은 철저히 유지되었다. 경태 5년(1454) 4월에 淮徐 이북에 疫癘가 크게 발생하여 황제는 太僕寺卿 黃仕俁이 "將被災極甚乏處今年該征錢糧俱爲除免, 輕緩之處量與寬停."[39]이라 건의한 것을 허락하였다. 경태 7년(1456) 10월에 湖廣 黃梅縣에 온역이 유행하자 칙령을 내려 사망자에 대해 "令顯志新鄰人等掩埋, 缺食者, 設法勸借賑恤 …… "[40]하라 하였다. 成化, 正德시기에 疫癘가 유행한 지역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돈과 식량을 나누어주어 구제활동을 펼쳤다. 정덕 8년(1513)에 江西에 온역이 유행하자 황제가 南京 刑部 右侍郎 鄧璋에게 명하여 "仍發本處予備倉及兩淮, 兩浙鹽價銀十萬兩給之."[41]하라 하였다. 嘉靖시기에 황제가 방역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친히 방서를 열람하여 방역처방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병에 걸린 백성을 구휼하는 조처도 힘을 얻었다. 가정 원년(1522)에 安陸의 衛軍에 瘴病이 발생하여 많이 죽자 황제가 安陸州의 知州인 王槐가 주청한 것을 윤허하여 "其歲辦等物量減十之五, 以示優恤 …… 各莊佃戶免今年田稅十之三, 他年如故, 第備勿輸."[42]하라 하였다. 가정 33년(1554) 4월 乙亥에 "都城內外大疫. 上聞之, 諭禮部曰 : 時疫大甚, 死亡塞道, 朕爲之側然. 其令太醫院發藥, 戶部同錦衣衛官以米五千石煮粥療, 用副聯好生之意, 死者官給蓆槁, 令所在居民收瘞之. 詔下, 貧民全活甚衆, 遠方聞者爭來就食, 戶部尙書方純以人

33) 林堯俞 等纂修. 俞汝楫 等編撰. 禮部志稿 卷50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597*943.
3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宣宗宣德實錄 卷188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198.
3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宣宗宣德實錄 卷110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833.
3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宣宗宣德實錄 卷110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833.
3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英宗正統實錄 卷131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p.887~888.
3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英宗正統實錄 卷155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032.
39)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英宗正統實錄 卷240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795.
4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英宗正統實錄 卷271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969.
4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武宗正德實錄 卷107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738.
4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世宗嘉靖實錄 卷16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83.

www.kci.go.kr

多食少請益發廩以賑之, 報可."[43]하였다. 萬曆시기에도 유행병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더욱 광범하게 세금을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만력 10년(1682) 4월에 順天府 등지에 疫癘가 성행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자 황제는 세금을 전적으로 감면할 것을 지시하였다. 만력 28년(1700)에 "保定巡撫江應蚊以幾內荒疫, 旱蝗相續爲虐, 乞敕盡罷礦稅並近祥行鹽·魚·葦·析稅等項, 仍乞將各省礦稅一切並罷不報."[44]하도록 간언하여 이 역시 황제의 동의를 얻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명대는 유행병이 많이 창궐하여 각 왕대 모두 정도가 다르게 방역 조치를 채택하였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嘉靖과 萬曆시기의 방역조치가 보다 강력하였다. 특히 嘉靖 황제는 친히 방서를 검열하여 '濟疫小飮子'를 창제하였다. 이는 왕조사회의 황제로써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황제가 방역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嘉靖시기에는 다른 왕대에 비해 유행병을 방역하는 조건이 더욱 좋았다. 이러한 사례는 왕조사회에서 의정사업의 성쇠는 황제가 의약에 대해 중시한 정도와 밀접하게 상관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의정에 대한 관리

1) 의정구조의 특징

명대는 당송의 의정경험을 계승하고 요·금·원시기에 의약기구를 설치한 것을 지양하여 집권의 성격을 띤 새로운 의정구조를 만들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의원이 전국의 의정, 의료, 의학교육 등의 기능을 모두 관장하여 당송시대에 각 의약기구들이 여러 상부기관에 예속되어 서로 협조적이지 못했던 폐단을 극복함으로써 의정에서도 집권적인 관리의 성격을 체현하였다. 둘째. 지방의학교육기관이 널리 설립되어 의학교육에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셋째. 군대의 의약조직이 보다 건전해져 관리와 병사의 의료수준이 상당히 제고되었다. 넷째. 의약과 관련된 구휼 기구는 기본적으로 옛 제도를 답습하였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였다.

2) 태의원의 관리 기능 강화

(1) 태의원의 연혁과 개요

태의원은 金代에 처음 설치되었고 원대에도 답습되었다. 원·至正 24년(1364) 명 태조가 吳王으로 불릴 때에 "置醫學提擧司, 提擧從五品."[45]을 두었다. 吳 3년(1366)에 太醫監으로 바뀌었다. 吳 4년에 태의감에서 태의원으로 다시 바뀌었다. 그 장관은 太醫院令이라 칭하고 정5품이었다. 후에 "太醫院令爲院使, 丞爲院判"[46]으로 바뀌었다. 永樂 19년(1421)에 成祖가 북경으로 천도한 후에 다시 북경에 태의원을 설립하여 이때부터 남북에 두 개의 태의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북경의 태의원에는 使·院判을 두었고, 남경의 태의원에는 원판만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북경 태의원이 남경 태의원을 지도하였고 전국 최고의 의정관리 기구가 되었다. 남, 북경의 태의원은 영락 19년에 시작되어 명말까지 지속되었다.

(2) 태의원의 구조

남·북경 태의원의 인원은 대동소이하였다. 북경에 설치된 태의원에는 정5품인 院使를 두었고 屬官의 숫자는 남경보다 많았다. 일반적으로 院使는 1명, 院判은 2명, 吏目 10명, 禦醫 10명, 醫士 70명, 의생 70명 등 총 160여 명을 배치하였다. 그렇지만 명대에 헌납하여 의관에 보임되는 일이 빈번하여 실제 숫자는 각 단계마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남경의 태의원에는 어의와 의생을 두지 않았다. 正統 2년(1437) 11월에 禮部尙書 胡濙 등의 간청에 따라 醫士 50명을 증설하였기 때문에 남경 태의원의 인원수가 60명 정도가 되었다. 남·북경의 태의원에 모두 惠民藥局과 生藥庫를 설치하여 大使, 副使 등의 관리를 두었고

4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世宗嘉靖實錄 卷409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439.
4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神宗萬曆實錄 卷349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224.
4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太祖洪武實錄 卷14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63.
4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138.

www.kci.go.kr

이러한 의관은 태의원에서 위임하여 파견하였다. 태의원의 업무는 禮部의 제약을 받았다.

(3) 태의원의 관리 기능강화

명대 이전 각 왕조가 설치한 의약기구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의약관리기구의 설치도 있었다. 西晉 이래로 太醫署, 兩宋에 翰林醫官院, 금원시기에 太醫院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대부분 禮部에 예속되어 있어 다른 의약기구의 지도와 제약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군주의 의료를 전문으로 담당한 尙藥局 등은 대부분 門下省, 殿中省, 內侍省 등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는 태의서 등의 예속 기관과 달랐고 또한 太醫署, 翰林醫官院의 제약을 받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약의 통일적인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명대의 의정관리는 중앙집권사상의 영향을 받아 의약이 집중적이고 통일되게 관리를 받는 국면이 나타났다. 궁정 의약기구인 禦藥方, 生藥庫, 安樂堂, 典藥局, 王府名醫所, 지방의약교육기구 등은 모두 의약관리의 중추인 태의원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의약과 관련된 업무는 일반적으로 태의원의 협조를 통하여 처리된 후에 실행되었다. 명대 태의원의 기능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은 6가지 방면이 있다.

① 황제의 醫藥詔令을 수행

왕조사회의 의약정책은 기본적으로 황제의 의약조령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의정관리기구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제정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정책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禮部를 통하거나 직접 황제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정책으로 관철시키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요 직책은 여전히 황제의 명을 받들어 행사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嘉靖 20년 5월 丁酉에 왕도에 疫癘가 유행하자 황제가 태의원에 명을 내려 順天府에 관리를 보내 약물을 배포하도록 조처하고 법을 만들어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태의원은 황제의 뜻에 따라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였다. 이 이외에 萬歷 15년 태의원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명의를 선발하여 五城에 파견하여 진료하고 약을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태의원은 황제의 조령을 받들어 행사하는 직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② 의생의 모집, 선발, 면직

명대에는 의생의 모집·선발·면직하는 권리를 태의원이 장악하고 있었다. 萬歷 21년(1593) 5월에 禮部에서 태의원이 의생을 관리하는 6항목의 직책을 올려 황제의 승인을 받았다. 이 6항목의 직책은 : "一預授塡注, 二分科頂利, 三內外通敘, 四大考等第, 五甄別醫官, 六收補習學."[47]이다. 이 6항목의 직책은 실제로 명대 태의원 의생관리 직책을 총결한 것이다.

③ 의관의 차출

태의원은 의생을 모집·선발·면직하는 일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王府 良醫所와 전국 府, 州, 縣, 監獄, 國子監, 會同館, 邊關衛所, 村鎭 등에 의생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선발하여 파견하는 방법은 대체로 隆慶시기의 규정과 비슷하였다. 隆慶 5년(1571)에 內府, 書堂 등은 邊關의 사례를 따라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 邊關은 한 차례 파견하고 書堂과 같은 곳은 두 차례 파견하였고 2년에 한 번씩 교대로 하고 9년의 만기가 되면 직책이 올랐다. 萬歷 2년(1574)에 차출하는 인원의 앞뒤 순서는 먼저 內殿에서 시험을 보아 2등급 의생을 모두 뽑고 다음에 官帶醫士에서 경력이 많은 자를 선발하고 재차 內殿에서 시험하여 3등급 의사를 뽑았다. 시험으로 뽑힌 1등급 醫士는 대부분 禦醫로 보충되었다.

④ 황실 의료

황제와 황실사람을 위한 의료는 태의원의 중요한 기능이다. 태의원의 院使, 院判, 禦醫들은 매일 內府 禦藥房에서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업무를 보았다. 군주가 시찰을 나가면 태의원의 관리가 수행하여 시봉하였다. 永樂 6년(1408) 8월에 禮部에서 황제가 巡狩할 때 태의원 堂上官 2명, 禦醫 2명, 生藥庫 2명, 醫士의 2/3를 선발하고 吏 3명 등이 수행하도록 건의하였다. 황제의 보건의료 이외에 皇子, 宮妃, 大臣, 外賓 등의 병환도 태의원에서 선발한 명의를 파견하여 진료하였다. 洪武 26년(1393)에 내외 관리 가

4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神宗萬曆實錄 卷260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639.

www.kci.go.kr

운데 늙고 병든 자가 있으면 태의원에 문건을 내려 혜민국에 전하여 관리를 돌보고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치료를 감당할 수 없으면 일반 백성으로 방면하게 하였다. 위급하고 어려운 병은 원적지로 돌려보내 나을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吏部의 의견을 듣고 임용하게 하였다.

⑤ 의생 교육

명대에는 중앙에 전문 의약교육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의학생을 양성하는 임무는 태의원에서 겸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태의원의 의학생의 숫자는 당송시대와는 비교가 안됐고 그 주요 목적 또한 태의원을 위해 의생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사회를 위해 의생을 양성하는 임무는 지방관리가 담당하였다.

⑥ 다른 의약기구에 대한 관리

禦藥房에 대한 태의원의 관리는 어의를 선발하여 어약방 提督太監 등의 직무를 겸임하는 형식을 통하여 실행하였다. 生藥庫, 惠民藥局, 安樂堂, 典藥局 등 의약기구의 통제에 대해서도 어의가 겸직하거나 태의원에서 의관을 지명하여 직무를 맡기는 형식을 통해 실천하였다. 이러한 협조와 제약을 통하여 명대의 의약관리 방면에 유기적인 체계가 만들어져 각기 일을 보는 폐단이 두절되었다.

3) 기타 의약기구

명대에 의정 최고 관리기구인 태의원을 설치한 것 이외에 필요에 따라 禦藥房, 生藥庫, 惠民藥局, 安樂堂, 典藥局 등의 기구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기구들은 한 방면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상호간이나 각자가 태의원과 일정한 연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구들은 명대 의약조직을 함께 구성하고 있었다.

(1) 禦藥房

의약조직에서 태의원이라는 주요한 관리기구 이외에 어약방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약방의 의관들은 황제를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의술이 가장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맡겼다. 正德 16년(1521) 정월에 武宗이 병이 나자 조령을 내려 의약에 정통한 자를 널리 찾으라고 하였다. 大學士 楊遷和는 "臣等竊惟天下名醫皆聚於太醫院, 又選其優者入禦藥房, 但當專任而信用之, 自收萬全之效, 又何侍諸草澤未試之人哉?"[48]라고 아뢰었다. 이 말에 의하면 어약방의 의관들은 태의원 중에서 선발하였고 또한 의술이 가장 우수한 자임을 알 수 있으며 고시를 거쳐서 직무에 적합하지 못한 자가 발견되면 다시 태의원으로 돌려보냈다. 弘治 원년(1488) 4월 癸巳에 "禮部會考太醫院醫士, 請留吳緩等二十人禦藥房供事, 李宗周等十五人退回本院應役. 上命於退回數內再留朱佐等五人"[49]하였다. 이로써 어약방의 의관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어약방의 연혁이 변천한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 명 태조 吳 원년(1364)에 원의 제도에 따라 尙藥局을 설치하였고 奉禦는 정6품으로 어용약물을 관리하였다. 洪武 6년(1373)에 禦藥局(즉 상약국이 변천한 것임)을 內府에 설치하였고 奉禦 등의 관리는 모두 內官, 內侍로 충당하였다. 嘉靖 15년(1536) 이전에는 또한 禦藥局, 禦藥房이라 칭하였다. 이후에 어약방을 聖濟殿에 부설된 禦藥庫(즉 生藥庫)로 개칭하였다. 어약방은 어용약이를 관장하였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관원들은 태의원의 어의가 겸임하였다. 成化 19년(1483) 12월에 "楊志升太醫院禦醫, 禦藥房辦事."[50]하였다. 이와 같이 어약방 의관과 태의원 의관은 서로 표리가 되어 집중적이고 통일된 강한 영도력을 발휘하였다.

어약방은 품계가 정6품이고 尙藥奉禦(후에 提督太監을 두었음), 直長, 禦醫, 藥童 등을 두었다. 그 주요 임무는 첫째 약재를 저장하고 그 품종과 산지의 우열을 식별하며 炮炙가공하였다. 명대에는 전국적으로 약재가 생산되는 지방에서 공납을 받아 매년 어약방으로 보내는 약재가 매우 많았다. 永樂 연간(1403~1424)에 들어온 수량만 55,474근이었고 이후 수량이 점차 증가하였다. 들어온 약재 모두 태의원의 생약고에 저장하였다. 어의 2명과 大使 1명이 검사해서 선

4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武宗正德實錄 卷195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228.
49)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孝宗弘治實錄 卷17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44.
5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宣宗成化實錄 卷247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417.

www.kci.go.kr

별하고 다시 예부에서 관리 1명을 파견하여 감독하여 수령하였다. 연말에 2권의 책으로 보고서를 작정하여 1부는 태의원에 비치하고 1부는 예부로 보내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어용약이의 제조와 공급을 담당하였다. 황제가 병들었을 때 어약방은 의관을 파견하여 내신과 함께 태의국에서 회동하여 약을 선택하며 연명으로 서명하고 약제의 약성과 證治法을 기록하였다. 약을 달일 때에는 태의원 관리와 내신이 감시하였다. 달인 후에 어의와 내신이 먼저 맛을 본 연후에 황제에게 바쳤다. 약을 바칠 때마다 일시와 병인을 상세히 적어 검토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어약방은 궁정에서 약물을 직접 관리한 기구이고 태의원과 서로 협력하여 표리가 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2) 皇子・後妃의 의료기구

궁정의 의료기구는 당송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 어약방을 설치하여 황제를 위한 약이를 조제하여 바치는 것 이외에 또한 태자・후비・여러 王府의 왕자의 의료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였다. 명대는 당송시대 궁정의약기구의 예속과 상호관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송 때에는 이러한 기구의 예속이 대부분 다르고 또한 그들 사이의 연계관계도 명확하지 못했다. 명대의 궁정에 설치한 각종 의약기구들은 모두 의약관리의 중추인 태의원과 이런 저런 연계가 있어 궁정 의약조직이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궁정에 황후와 비빈이 요양하는 "安樂堂"을 설치하여 의관 3명과 의사 36명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의관과 醫士들은 모두 태의원에서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심사, 전보, 파면 등도 모두 태의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안락당도 실제로 태의원의 부속기구라 할 수 있다.

皇子의 의료를 위한 기구에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전적으로 태자를 위한 것으로 典藥局이라 하였다. 다른 하나는 전국 각지에 分封된 왕자를 위한 것으로 良醫所라 하였다. 전약국은 洪武 2년(1369) 8월에 설치하고 "郎一人(秩正五品), 丞二人(從五品) …… 典藥局掌同禦醫修合藥餌, 供進湯液之事."[51]하여 주로 태자를 위해 약이를 진상하였다. 그 아래에 司藥, 典藥 등의 의관을 두었다. 명대 초기에 중앙의 통치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황제의 아들에게 전국 각지를 分封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王府에 良醫所를 설치하였다. 홍무 4년(1371) 양의소의 의관들의 등급을 "醫正, 正七品 ; 醫付, 從七品."[52]으로 정하였다. 홍무 28년에 "良醫所良醫正一人, 正八品 ; 良醫付一人, 從八品."[53]으로 하였다. 양의소에는 醫正과 醫付 이외에 良醫 약간을 두었다. 전약국과 양의소에 의관을 상설하였는데 모두 태의원에서 醫士를 천거하여 吏部로 보내어 뽑았다. 이 이외에 태의원은 항상 때에 따라 명의를 전약국과 양의소로 파견하여 왕자를 진료하고 귀중한 약물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이러한 기구들은 실제로 태의원의 부속 혹은 파견한 기구임을 알 수 있다.

(3) 會同館 등에 의약설치

명대에는 會同館, 四夷館 등 외국에서 온 내빈이 거주하는 객사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기구는 唐代의 四方館에 기초하여 발전된 것이다. 회동관 안에 의생을 배치하였다. 嘉靖 5년(1526) 4월에 "命會同館醫士如四夷館通事事例, 本館曆役三年給與冠帶, 又三年給與食糧一石, 又三年升授吏目. 仍於本館辦事, 其各色藥材及該支食糧悉於太醫院帶支, 遇缺推補"[54]하였다. 가정 39년(1560)에 회동관의 의생은 외국인과 수행자 등 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즉시 의약을 주고 년 말에는 반드시 그 해 사용한 약재의 수량 및 치료한 인원수를 회동관 提督主事處에 보내어 확인하고 태의원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상술한 사실에서 회동관의 의사 및 약재들은 모두 태의원에서 선발하고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약재를 사용한 정황의 심의와 의사의 심사 등에 관해서도 모두 태의원에서 책

5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太祖洪武實錄 卷241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180.

5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148.

53) 林尭俞 等纂修. 俞汝楫 等編撰. 明史 卷75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8*200.

5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世宗嘉靖實錄 卷63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515.

www.kci.go.kr

임지고 진행하였다. 회동관 등의 기구에서 의약사업 역시 태의원의 관리와 제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惠民藥局의 역할

명대는 唐·宋·元시기에 의약으로 혜민하는 기구를 설치한 전통을 계승하여 "洪武三年(1370)置惠民藥局, 府設提領, 州縣設官醫. 凡軍民之貧病者, 給之醫藥."[55]하였다. 永樂 4년(1406) 12월에 癸丑에 "上與侍臣語, 知京師之人多有疾不能得醫藥者, 歎曰 : 府內貯藥材甚廣而不能濟人於闕門之外, 徒貯何爲? 命太醫院如方制藥或爲湯液或丸或膏, 隨病所宜用於京城內外散施. 仍訪朝臣中有通於醫者俾分任其事, …… 命禮部申明惠民藥局之令必有實惠, 勿徒有文具而已."[56]할 것을 명하였다. 宣德 3년(1428) 3월에 禮部尙書인 胡濙이 혜민약국에 "今雖有醫官醫者而無局舍, 藥材. 宜令有司亦於農隙修藥局, 遵洪武之法行之, 庶不負朝廷惠恤軍民之意. 從之."[57]할 것을 건의하였다. 成化 12년(1476)에 "又廣設惠民藥局, 治療囚人."[58]할 것을 명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혜민약국이 빈민의료를 위해 설치된 기구임을 말해주고 있다. 약물은 태의원에서 지급하였고 의관도 역시 태의원에서 심사하여 파견하였다. 따라서 혜민약국과 태의원도 일정한 연계를 맺고 있었다.

위에 언급한 명대에 설치된 의약기구들을 종합하자면 대부분 태의원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었다. 이와 같이 명대의 의약조직이 상호 연계하여 제약하는 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의약관리도 여기에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4) 지방 의학교육

명대 중앙의학교육은 당송시대에 비해 퇴조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명대에 世醫제도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의생의 교육은 주로 家傳 世業이었다. 중앙은 의학교육에 전문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태의원에서 겸하여 주관하였다. 학생들의 출신도 주로 의가의 자제였다. 교사는 태의원에서 선발하였다. 명대 의학은 大方脈, 小方脈, 婦人, 瘡瘍, 鍼灸, 眼科, 口齒, 接骨, 傷寒, 咽喉, 金鏃, 按摩, 祝由 등 13과로 나누었다. 이 시기에 이미 상한과가 독립되어 있었고 의관과 의학생들이 각각 전공을 선정하였다. 13과의 공통과목은 『素問』, 『難經』, 『脈訣』이고 그 이외 각과의 특징에 근거하여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초학자의 필요에 응하여 명대에는 간단하면서 요점적이고 통속적인 이해하기 쉬운 입문서가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劉純이 洪武 21년(1388)에 편저한 『醫經小學』과 李梴이 萬歷 4년(1576)에 편저한 『醫學入門』 등이 있었다. 명대에 의생의 고시가 1년에 4차례 있었고 3년에 大考가 한 차례 있었으며 재학 중인 의학생과 태의원 醫士 등도 함께 大考에 참가하였다. "三年, 五年一試, 再試, 三試, 乃黜陟之"[59]하였다. 3년에 한번 치르는 大考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고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을 補習하여 재시를 치렀고 불합격한 사람은 다시 1년을 더 공부하였으며 세 번의 기회를 주어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축출되었다. 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4등급으로 나누었다. 1등급은 본래 의생이면 醫士에 충원되고, 醫士로 冠帶가 없으면 관대를 지급하고, 원래 내전에서 근무하면서 冠帶醫士는 참작하여 1급 승진시켰다. 내전에 결원이 생기면 태의원에서 결원된 것에 따라 차례로 선발하여 보냈다. 2등급은 원래 의생이면 醫士로 충원되고, 의사로 관대가 없으면 관대를 지급하고, 원래 내전에서 근무하였으면 계속 복부하지 않고 태의원으로 돌아가 직무를 맡았다. 3등은 여전히 태의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4등급은 원래 관대가 있었으면 관대를 허락하지 않고, 품계와 녹봉을 1년 동안 내렸다. 雜織의 녹봉을 받았던 자는 강등하여 관대의사에 충원하고, 식량을 7년 동안 받은 자는 강등되어 의생으로 충원하고 月糧만

55) 林堯俞 等纂修. 俞汝楫 等編撰. 明史 卷74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8*185.
56) 林堯俞 等纂修. 俞汝楫 等編撰. 禮部志稿 卷65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598*105.
5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宣宗成化實錄 卷40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16.
58) 林堯俞 等纂修. 俞汝楫 等編撰. 明史 卷94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8*487.
59) 林堯俞 等纂修. 俞汝楫 等編撰. 明史 卷74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8*185.

www.kci.go.kr

지급하였다. 고시에서 4등급을 받은 의생은 반년을 더 공부한 뒤에 다시 재시험을 보게 하였다. 진전이 있으면 원래의 봉급과 冠帶로 회복되었다. 통과하지 못하면 태의원에 배치되어 약물을 銼硏하는 업무를 하였다. 돈을 출연한 冠帶의사는 반드시 3년에 한번 大考를 보았다. 성적이 1등급인 자는 각종 의생에 준하여 마찬가지로 결원에 보충되었다. 3년의 大考에 통과하지 못한 자는 태의원에 남아서 근무하지 못했다. 이로써 명대 태의원의 의학교육은 주로 태의원을 위해 의생을 양성하였기 때문에 당송시기 중앙의학교육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대에 지방의학교육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각 府, 州, 縣에 기본적으로 의학과 더불어 지방의약행정과 의료를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정복한 지방이나 새로 설립한 州縣에 지방정권을 세울 때 동시에 의학을 설립하였다. 지방에 일반적으로 의학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통치자가 의학교육의 발전을 중시한 것과 유관하다. 명 태조 朱元璋은 의학교육을 중시하였다. 洪武 17년(1384)에 府・州・縣에 모두 의학을 설립하도록 규정하여 府에 正科 1명(종9품)을 두고 州에는 典科 1명을 두었으며 縣에는 訓科 1명을 두었다. 홍무 35년(1402) 12월에는 成祖가 즉위하자 옛 제도를 복구하여 전국 郡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명조는 태조 때부터 지방의학교육을 발전시키는 방침을 확립하고 成祖가 보호하고 실시한 이래로 이를 답습하여 바꾸지 않음으로써 명대는 지방의학교육 방면에 있어서 다른 왕조보다 뚜렷한 공헌을 하였다. 『明實錄』과 『大明會典』에 기재된 것을 근거하여 명대 각 州縣에 설립한 의학을 순서에 따라 표 2로 나타내었다.

아래의 표 2에서 명대에 지방의학의 설치가 비교적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州縣에는 모두 의학이 설치되어 있었다. 새로 만들어진 州縣은 의학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州縣의 정권을 세움과 동시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의생이 부족한 府縣은 정부가 부근의 府縣에서 醫戶를 선발하거나 의학생을 그 府顯에 파견하여 의료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명대에는 州, 府, 縣에 기본적으로 의학을 설치하였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명대 지방의학은 지역의 의정 관리, 의료 및 의학교육 등 3가지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각 현은 의관과 의학생의 숫자가 매우 적었다. 그렇지만 명대는 지방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5) 군진 의학

元朝를 붕괴시킨 明朝정권은 군대를 매우 중시하였다. 따라서 명대에는 군대조직이 방대하였다.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 정부는 군대의 의약업무를 강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두드러진 점은 다음과 같은 두 측면으로 나타났다.

(1) 軍醫 조직

명대 군대는 京軍, 內地軍, 邊境衛所軍으로 나누고 이러한 군대에 모두 정식의 軍醫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고정된 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변경위소군의 중요한 거점에는 의사 1명을 파견하여 의료 업무를 맡았다. 내지군에는 醫人將, 毒藥將, 醫馬將 등을 두었다. 경군의 의관은 변경위소군에 비해 의사의 숫자가 적었지만 병에 걸리면 태의원에서 의사를 파견하여 치료하였다. 『明史』 권89 兵志의 기재에 의하면 군대에 醫官, 醫士의 숫자가 비교적 적어 평균적으로 1만 명에 의사 1명을 두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醫士는 뛰어난 의술을 지닌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인 의료기술을 지닌 의생들은 의사의 숫자보다 많았다. 『明實錄・神宗』에서 萬歷 11년(1538) 6월에 薊・遼의 督撫官인 周泳 등이 군대에 雜流를 없애고자 하는 상소에서 군대에 旗鼓, 牢伴, 醫生, 匠役이 만여 명을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출정에 나가지고 않고 또한 일도 하지도 않으니 이를 개혁하여 부대에 편입시켜 함께 훈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명대 군대에는 醫士 이외에 의생이 있어 이러한 사람들은 전사와 마찬가지로 군영에 편입하여 일반군사의 질병을 책

www.kci.go.kr

왕조 기년	서기	지방 의학 설치 상황
洪武 28년 1월	1395	丁酉 때 四川, 鹽井에 衛軍民指揮使司에 儒醫 …… 學官 …… 을 설치하였다.
永樂 4년 2월	1406	四川 天泉 六番詔討司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영락 6년 1월	1408	廣西 太平府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영락 7년 9월	1409	乙酉 때 諒山, 北江, 建平 3개 府 및 歸化, 南京 2개 州 및 鷄陵, 董淵, 黎平, 武寧, 平陸 7개 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영락 8년 7월	1410	諒江, 三江, 淸化 3개 부 및 快州에 의학을 설치하였고 11월에 四川, 永寧 宣撫司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영락 9년 6월	1411	사천의 九性長官司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영락 14년 5월	1461	丙午 때 府, 州, 縣에 …… 의학을 설치하였고, 建昌, 鎭蠻, 新安, 太原, 宣化 5개 부에 설치하였고 嘉興, 三帶, 鹹蠻, 北江, 嘉林, 諒江, 上洪, 東湖, 下洪, 洮江, 沱江, 宣江 13개 주에 설치하였고, 麻龍, 安立, 水尾, 象淸, 威應, 平細江, 善才, 望瀛, 大灣, 淸遠, 平湖, 庚安, 多錦, 安寧, 古壟, 順爲, 太平, 眞利市, 芙蓉, 東結, 永涸, 安志, 水棠, 淸沔, 麻溪, 淸波, 夏平, 古農, 收物 31개 현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영락 15년 5월	1417	四川 天金 六番詔討司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영락 16년 8월	1418	貴州의 普安衛의학을 普安州의학으로 바뀌었다.
영락 17년 3월	1419	廣鹹州에 의학을 설치하고 또한 太原, 古蘭, 多翼, 洞喜 4개 현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영락 19년 2월	1421	貴州布政司, 思州, 銅仁, 石阡, 黎平, 新化 5개의 부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宣德 9년 10월	1434	陝西, 西寧의 衛軍民指揮使司에 의학 正科 1명을 두었고 雲南 澂江府에 의학 정과 1명을 두었다.
선덕 10년 5월	1435	四川 都司松潘 등지의 軍民指揮使司에 의학을 설치하였고 또 운남 大理府에 의학 正科를 설치하였다.
正統 7년 6월	1442	운남 鶴慶의 軍民府에 의학과 정과 1명을 두었고 9월 丙子 때 운남 曲靖 軍民府에 의학 및 정과 1명을 설치하였고 直隸 隆慶州 永寧縣에 의학 訓科 1명을 두었다.
정통 8년 2월	1443	운남 大理府 鄧川州에 의학을 설치하고 典科 1명을 두었다.
정통 9년 1월	1444	운남 昆陽州 의학에 官降印을 설치하고, 2월에 운남 祿豊縣에 의학 訓科 1명을 두었다.
정통 12년 2월	1447	운남부 官良縣의 의학 훈과 1명을 두었다.
정통 13년 3월	1448	사천 馬湖府 木川長官司에 의학을 설치하고 훈과 1명을 두었다. 운남 趙州에 의학을 설치하고 典科 1명을 두었다. 11월에 운남 武定軍民府 元謀縣에 의학과 官降印을 설치함
天順 2년 7월	1458	복건 建寧府 壽寧縣에 의학을 설치하고 官降印을 두었다.
成化 1년 8월	1465	산동 曹州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성화 3년 1월	1467	사천 資陽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성화 7년 5월	1471	사천 潼川州 樂至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성화 10년 4월	1474	陝西 文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5월에 浙江 湯溪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성화 11년 12월	1475	東卿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성화 19년 9월	1483	萬全都司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弘治 원년 1월	1488	陝西, 西寧, 南寧衛에 의학을 설치함, 9월에 복건 漳州府 漳平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홍치 2년 1월	1489	사천 重慶府 璧山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홍치 3년 12월	1490	應天府 高淳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홍치 8년 9월	1495	龍門縣과 番禺, 增城 두 현의 교차지점에 의학 訓科 1명을 두었다.
홍치 9년 10월	1496	直隸 鳳陽府 亳縣을 亳州로 승격하고 의학도 訓科에서 典科로 바꾸었다.
홍치 10년 1월	1497	太倉州를 蘇州府로 명명하고 의학을 예에 따라 설립하였다.
홍치 11년 8월	1498	廣東 新寧縣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홍치 13년 10월	1500	寧夏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홍치 17년 5월	1504	廣西 鎭遠府 河池縣을 州로 승격시키고 醫學을 典科로 바꾸었다.
홍치 19년 7월	1506	昌平縣을 昌平州로 바꾸고 의학은 典科로 바꾸었다.
正德 6년 7월	1511	廣西 思恩府에 岑浚의 난이 일어나 流管을 개설하고 守臣이 의학 설립을 청하였다.
정덕 7년 8월	1512	東鄕, 萬年 두 현에 각각 의학 1명을 두었다.
嘉靖 8년 4월	1529	遼東, 廣寧 등 18衛에 의학을 설치하였다.
萬歷 8년 4월	1580	江西 建昌府에 瀘溪縣을 신설하고 의학과 鑄印을 설립하였다.

표 2 명대 지방의학 설립상황 일람표

www.kci.go.kr

임지고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생은 군대에서 많은 비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알 수가 없다.

군대에는 고정된 軍醫 이외에 惠軍藥局을 설치하여 병에 걸린 관리와 병사에게 약물을 지급하였다. 혜군약국의 약물은 모두 태의원에서 제공하였다. 嘉靖 10년에 각 진영에 혜군약국을 모두 설치하고 태의원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한 의술에 정통한 醫士 1명을 약국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명대는 항해술이 발달한 시기였다. 鄭和는 1405년에서 1433년까지 28년 동안 7차례 서양으로 갔다. 『瀛涯勝覽』의 기록에 의하면 서양으로 간 官校, 旗軍, 勇士는 …… 모두 27,670명이었으며 …… 醫官, 醫士 180명도 있었다. 寶船은 모두 62척이었기 때문에 선박마다 의관과 의사가 평균 3명이 된다.

成化 16년(1400) 10월에 陝西, 甘肅 등 10여 衛所에서 현지 布政司에 각자 의학 1곳을 설치하여 의술에 정통한 사람을 선발해서 군대의 의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게 해달라고 주청하여 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이로써 軍醫학교의 모태가 대체로 형성되었고 이후 군대의생을 양성하는데 공헌하였다.

군대에 고정된 군의를 설치한 것 이외에 태의원에서 醫士를 선발하여 군대에 파견하였다. 嘉靖 17년(1538)에 "太醫院撥醫士四名隨帶藥餌前去調治 ……."[60]하였다. 이밖에 鎭守邊關에 의사와 약품이 부족할 때에는 현지에서 의생들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正統 3년(1438) 12월 辛亥에 "鎭守大同參將都指揮同知石享言, 奉命率遊兵巡邏塞外, 動經旬月, 軍中往往有疾病者乏人治療. 上命山西布政司及都司各選醫一人隨軍往來, 仍令支給官錢措置藥餌."[61]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군대의생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군대의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일련의 포상과 진급제도를 제정하였다. 嘉靖 9년(1530) 7월 癸酉에 "吏部請令團營醫官辦事三年勤謹者, 授以冠帶. 再曆三年有效者, 授以目職事, 永爲例. 從之"[62]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군의를 안정시키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2) 군사의료의 강화

태조 朱元璋과 成祖 朱棣는 농민과 군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사의 질병에 따른 고통에 대해 중시하였다. 洪武 22년(1389) 정월에 "禦奉天門退朝, 召五軍都督府臣諭之曰 : 軍士有從征亡死者, 有疾病而死者, 其父母妻子老弱無依, 另已優給然無遠違鄕裏. 終無所托. 其有願還鄕依親者, 悉遣其去, 人給鈔五錠爲道理費"[63]하라고 하였다. 이 이후부터 부상당하여 장애가 생긴 병사에게 약품과 돈, 식량 등을 지급하였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관리에게 명하여 제사를 지내고 후하게 장자를 치게 하였으며 그 가속들을 구휼하고 官號를 추서하고 자식에게는 官爵을 수여하였다. 成祖 때에 이르러 군대의 보건의료와 구휼이 보다 강화되었다.

永樂 8년(1420) 2월 甲寅에 "車駕次泥河, 上途中見病卒, 命馬載至營, 遂命諸將撫恤軍士, 命太醫院遣醫分療各營將士之病者."[64]하게 하였다. 같은 해 6월 乙卯에 어가가 靑華原에 머물 때에 다시 여러 장수들에게 "行軍之際巡視士卒, 有病者, 悉舁載赴營"[65]할 것을 명하였다. 성조는 部下에 병든 군졸을 수용하여 의약을 베풀게 명하는 한편, 문무관원에게 항상 병든 군졸을 수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병든 군사를 수용하고 포상하는 방법을 규정하여 이러한 것이 일상화되도록 하였다. 같은 해 6월 壬子에 "車駕玉擱澗山, 上出營外見病卒, 謂翰林學士胡廣, 侍講學士楊榮等曰 : 士卒從朕征戰, 今旋師在途, 去家漸近痛而病如苦如此, 若不收恤必致流離. 遂命中官周視營外將士, 存病者悉給醫藥, 仍命諸將善軍士之有病者, 毋令失所"[66]할 것을 명하였다. 같은 해 6월 癸亥에

6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世宗嘉靖實錄 卷186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p.1377~1378.
6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英宗正統實錄 卷49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21.
6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世宗嘉靖實錄 卷114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963.
6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太祖洪武實錄 卷195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986.
6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68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439.
6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70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454.
6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70

www.kci.go.kr

또한 “有收病卒一人至營者, 賞鈔五錠.”[67]할 것을 규정하였다. 성조가 이상의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병든 군사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를 기초로 성조는 또한 병든 군사의 휴양제도를 실시하라고 하명하였다. 또한 태의원에 명하여 각 營에 의사를 추가로 배치하게 하였다. 永樂 12년(1414) 4월에 황제가 북방 정벌에서 淸風壑에 주둔할 때 “命太營, 五軍諸將, 但官軍有疾, 令太醫給藥. 未痊者, 遣人護送還萬全休養 …… 宜盡心撫恤, 無令失所.”[68]하라고 명하였다. 영락 20년(1422) 여름 4월 辛卯에 성조는 또한 “命太醫院增設醫士於各背, 諭之曰 : 將士國家爪牙, 今從征在外, 朕夙夜念其艱難. 食則慮其饑, 衣則慮其寒, 惟恐有失所者. …… 其令醫者, 朝夕巡視各營將士, 有疾者與善藥, 勿苟爲文具.”[69]할 것을 하명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실시되어 군사의 의료보건 수준이 한층 제고되었다.

명대 초기에 太祖, 成祖는 군사의료와 구휼조치를 강화하였고 이후 황제들이 본받았다. 宣德은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길 장군에게 지혜와 용기가 있다 하여도 반드시 사졸을 돌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옛날 명장은 모두 군사의 구휼을 바탕으로 삼아 평시에 위무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전쟁에 임하여 죽도록 싸운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한 “軍中有疾病者太醫院與善藥. 如果不能前進, 付監所在官司調理.”[70]할 것을 강조하였다. 景泰 5년(1454) 6월 癸亥에 “巡按直康藍察禦史張鵬奏 : 宜府大同等處官軍遠離鄕土來備邊防, 敝衣非食何可聊生, 草柴土室不堪安休, 病則無醫, 歿則無棺, …… 乞爲給醫幷設義塚, 歲時致祭. 帝令兵部移文各邊, 幾病者給之醫藥, 死者爲之棺斂.”[71]하였다. 요컨대 명대 군사의 의료보건과 구휼사업은 다른 왕조에 비해 진보되었다. 특히 영락시기 군사의 구휼사업은 明朝뿐만 아니라 모든 왕조사회에 있어서 두드러졌다.

6) 사회적인 의약 구휼사업

(1) 養濟院의 설치

명대 초기 정부는 전국 각지에 養濟院을 설립하여 고아, 빈민, 장애인을 거두었다. 洪武 7년(1374) 8월에 옛날 양제원이 좁아 태조는 龍江에 조용하고 넓은 곳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 260개의 방이 딸린 건물을 지었다. 홍무 26년(1393) 6월에 군인 가운데 노약자나 장애인 혹은 자손이 없는 자들을 양제원에서 돌볼 것을 명하였다. 永樂시기에 양제원은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되어 설립되었다. 영락 3년 2월에 “巡按福建監察禦史洪堪所言十事, 其三曰 : 存恤孤老, 王政所先, 今處各府州縣養濟院多頹壞, 有司非奉勘合, 不敢修葺, 孤老之人多無所依. 又或有一縣之內, 素無建置者, 夫百裏之縣豈無所依. 良由有司不體朝廷恤民之意. 故略而不理, 乞敕有司常加修葺, 未建置者, 卽建置之, 如例收養. 薪米布匹皆按先期給之. 或有疾病, 令醫療之, 庶無告之民不至失所.”[72]하게 건의하였다. 영락 이후에 양제원에 대한 관리가 점차 혼란해져 正統시기에 이르러서는 유명무실해졌다가 天順시기에 다시 회복시켰다. 天順 원년(1457) 5월 壬申에 “上諭戶部臣曰 : 比聞京城貧窮無依之人行乞於市, 誠可憫恤. 其令在京二縣東於寬閑處設養濟院一所收養之. 卽令暫於京包支米, 擇順便寺觀內煮飯. 日給二餐, 器皿柴薪蔬菜之屬, 從府縣設法措辦. 有疾者撥醫調治, 病故者給以棺木, 務使鰥寡孤獨之人得沾實惠. 仍令五城兵馬司從實取勘, 當賑濟者, 卽令送府不得濫冒侵欺, 違者罪之.”[73]할 것을 하명하였다. 嘉靖시기에 양제원 밖에 蠟燭, 二竿寺를 설치하여 빈민을 거두었고 구휼에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을 규정하였다.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453.

6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70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454.

6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92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576.

69)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122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737.

7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宣宗宣德實錄 卷20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67.

7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英宗正統實錄 卷243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814.

7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太宗永樂實錄 卷33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18.

7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英宗正統實錄 卷277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2039.

www.kci.go.kr

첫째.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에게는 베 한 필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둘째. 정부에서 입법하여 유기된 여자를 거두어 보살피도록 한다. 민간에서 고아 20명 이상을 거두어 부양하는 자가 있으면 冠帶를 부여한다.

셋째. 빈민과 거지에게 은 두 냥과 곡식을 지급한다.

넷째. 약을 지급한다. 재해이나 가뭄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의약을 베푸는 기관을 설치하고 良醫를 파견하고 鄕마다 局을 세워 기아와 역병에 시달리는 백성을 치료한다.

다섯째. 길거리에서 사망한 시신은 때에 맞춰 매장한다.

명대에 양제원의 설치는 빈곤하고 병든 무의탁자의 의료보건에 일정한 보장을 받게 하였다. 때로는 정지되었다가 실행되었다가 하여 안정적이지는 못했지만 왕조사회에서 빈민을 위한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2) 漏澤園의 설치

養濟院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빈곤하고 병든 자들을 구제한 것 이외에 죽어서 장례를 치러줄 친족이 없고 들판에 버려진 유해와 유골 등에 대해 매장을 실시하였다. 洪武 3년(1370)에 전국 郡縣에 명하여 義塚을 설치하여 시신을 매장하고 火葬이나 水葬을 금지시켰다. 가난하여 매장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부가 의총에 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成化 연간(1465~1487)에 왕도 교외에 漏澤園을 설치하였다. 『명실록』의 기재에 의하면 매번 전쟁을 치른 뒤에 정부는 사람들을 파견하여 전쟁터를 치우고 시신을 매장하도록 하였다. 義塚·漏澤園의 설치는 역병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

(3) 의약 구휼조치

명대에 養濟院, 漏澤園 등 전문적인 구휼기구를 설치한 것 이외에 의약으로 구휼하는 제도와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고정된 기구와 임시로 채택된 조치가 서로 결합하여 명대의 의약 구휼사업에 상당한 진보가 있게 하였다. 채택된 주요 조치들을 아래에 표 3으로 나타내었다.

표 3은 주된 조치만 통계를 낸 것이지만, 이를 근거로 명대에 의약으로 구제하고 구휼하는 조직인 惠民藥局, 養濟院, 漏澤園 등을 설치한 것 이외에 의약으로 구휼하는 조령을 자주 공포함으로써 의약구휼 업무를 보다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유행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것과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의 의약구휼 등에 대한 것들은 모두 통치자의 의약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대 의약구휼 조치에 대한 총결을 통해서 명대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의료보건과 구휼방면에 취한 태도가 비교적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명대 의약정책과 의학발전과의 관계

1) 世醫제도의 공헌

명대는 원대에 醫戶를 관리한 경험을 계승하여 제정한 世醫제도와 함부로 改籍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은 의사들을 안정시켰다. 醫戶의 자제는 어릴 때부터 의술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전인의 의료기술과 경험은 잘 전수되었다. 명조 270여 년 동안 기본적으로 세의제도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호는 물론이고 의학의 총체적인 방면에서 보아도 명대는 각과의 임상치료의 경험을 광범하게 누적시켰는데, 그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의료경험이 부단히 총결되고 제고되었다. 楊繼洲는 세의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인들의 치료경험을 잘 흡수하고 자신이 몸소 실천한 경험을 결합시켜 『鍼灸大成』을 편찬하여 침구학의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둘째 대를 이은 醫案이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江瓘의 부자가 정리 편찬한 『名醫類案』은 이전 의가의 의료경험을 계승하고 전파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셋째 변증논치가 부단하게 변천하였다. 張三錫은 장씨 가문의 世醫로 30여 년간 노력하여 고인의 치병대법에 8가지 즉 陰陽·表裏·寒熱·虛實이 있고 氣血痰火는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상술한 3가지 점 이외에 세의제도로 인하여 수많은 의가들의 의료경험이 일정한 지역, 일

www.kci.go.kr

중국기년	서기	의약구휼 조치
洪武 5년	1372	각 州와 城市 및 鄕村에 명하여 …… 고아, 과부, 장애자, 병자 등 생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관에서 거두어 돌본다.
홍무 18년	1385	禮部에 명하여 國子監 학생이 병들면 관에서 의약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병이 오래되어 치료되지 못한 자는 본가로 돌려보냈다. 완쾌하면 다시 들어오게 하였고 관리가 약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사망자는 관을 지급하여 상을 치르도록 하였다.
홍무 21년	1388	황제가 이르길 학생들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와서 학문에 힘쓰니 오래되어 衣冠이 낡게 되고 병이 들어도 탕약을 달여 줄 이가 없는 자는 조정에서 이를 보살피도록 하라고 하였다.
홍무 24년	1391	군민이 사망하여 그 부모처자가 고아나 과부나 독거 노인이 되어 병들어 의탁할 곳이 없으면 각지의 관리가 보고하여 알릴 것을 명하니 짐이 그들을 구휼하고자 한다.
홍무 30년	1400	太學은 인재를 교육하는 곳으로 …… 학생 가운데 …… 가족이 없는 자가 병에 걸리면 養病坊에서 요양하도록 하였다.
永樂 6년	1408	부역에 나간 軍民 중에서 병이 들면 모두 의약을 지급하였다.
영락 9년	1411	天壽山의 군민과 장인들이 부역으로 고통 받은 지 오래되었으니 …… 병자는 督醫가 치료하도록 하고 병이 오래 되어 낫지 않으면 배와 수레를 보내어 귀환시키고 병으로 사망한 자는 관리가 유골을 고향으로 보내어 장사를 지내주었다.
영락 15년	1417	5월에 工部에 安樂營을 세웠다. 營을 만든 장인에서 병든 자는 태의원 分官이 醫士 350 인을 인솔하여 치료하게 하였다. 監察禦史 錦衣官을 파견하여 순시하게 하였다. 사망자는 관리가 유골을 고향에 보내어 장사를 지내주었다.
영락 19년	1421	9월에 京師에서 복역하는 자 중에서 …… 병에 걸려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도 낫지 않는 자는 구휼하였다.
宣德 3년	1428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인 및 심한 장애자들은 전례에 따라 구휼하고 빠뜨리지 않도록 하였다. 80세 이상 된 자에게는 비단 2필과 술 1되, 고기 10근을 지급하고 때때로 그 안부를 물도록 하였다.
선덕 6년	1431	3월에 노인, 어린이, 불구가 된 군민 장인 993명을 방면하였다.
선덕 8년	1433	군사와 官船에 보내는 백성들 중에 …… 병이 있는 자는 의사에게 치료하도록 하였다. 죽으면 소관된 사람이 즉시 거두어 염하였다.
正統 4년	1439	福建 崇安縣에 …… 큰 홍수가 나서 익사자가 셀 수 없었다. 戶部에서 구휼을 감시하게 하였다.
정통8년	1443	군민 중에 과부 홀아비 고아가 있으면 관리는 전례에 따라 구휼한다. 70세 이상과 장애인에게는 장정 1인이 보살피게 하였다.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은 관에서 진휼하였다.
景泰 4년	1453	五河橋 등지에 거처하는 남녀 폐질자 중에 신고 되지 않은 자가 백여 명이 있어 …… 五城의 兵馬司에 칙령을 내려 順天府에 보내 규휼하였다. 兩京에 飯所를 설치하고 관에서 쌀을 준비하여 가난하고 병든 군민을 구제하였다.
萬曆 10년	1582	태의원 官廠에서 藥餌로 백성을 널리 구제할 것을 명하였다.
참고: 위의 자료는 明實錄에서 인용		

표 3 의약 구휼조치 일람표

www.kci.go.kr

정한 치료대상을 관찰함에 있어 조상이 전한 의료기술의 지도 아래에서 모두 얻은 것이다. 이러한 의료경험은 종종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류함으로써 각기 특색을 갖추었고 동시에 국한성도 있었다. 오랜 시일이 지나면서 이러한 국부적인 의료경험이 점차 학술유파를 형성하였다. 薛己, 張景嶽을 대표로 하는 溫補學派, 陳實功을 대표로 하는 外科正宗派, 명대에 싹터서 청대 의가王惟德이 집대성한 外科全生派, 청대 高秉鈞을 대표로 하는 外科心得派 등이 형성되었는데, 모두 명대 세의제도와 관계가 있었다. 학술유파의 탄생은 학술논쟁을 촉진시킴으로써 명대 의학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였다.

2) 본초학의 발전

명대에 전국각지에서 공납한 약재의 수량이 왕조사회 중에서 가장 많았다. 成化 이후에 매년 공납된 약재는 십여 만근이나 되었다. 嘉靖 원년(1522)에 약재의 총계는 264,227근에 이르렀다. 萬歷 연간(1573~1620)에는 249,581근을 거두어들였다. 이 이외에 또한 외국약물을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조선, 安南, 瓜哇 등 20여 국가에서 약물을 공납 받거나 수입하였다. 약물을 대량으로 들여와 쌓아두어 썩히는 등 많은 폐단이 있었지만 본초학을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명 정부는 일찍이 인력을 동원하여 本草方書를 수정하였다. 태의원 院判인 劉文泰는 명을 받들어 본초를 편수하여 1505년에 『本草品匯精要』를 만들었지만 유문태 등은 弘治황제의 병을 치료할 때 "…… 偏執方藥 …… 宮車晏駕, 罪惡深重."[74]하다고 하여 죄를 받아 하옥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 『本草品滙精要』는 명대에 간행되지 않았다. 이밖에 황태자인 朱橚이 『救荒本草』를 편찬하였고 민간 개인의 본초저술도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徐彦純의 『本草發揮』, 王綸의 『本草集要』, 陣嘉謨의 『本草蒙荃』 등이 있었다. 명대 본초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李時珍의 『本草綱目』이다. 여기에 수재된 약물은 모두 1892종이며 附方이 만여 개이다. 이는 본초학에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세계약학사에 있어서 불후의 명작이라 할 수 있다. 명대에 개인의 본초저작이 대량으로 증가한 것은 황제의 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명대에 약물이 대량으로 공납되었고 특히 외국약물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약물의 품종도 따라서 증가함으로써 의가들이 이러한 약물을 접촉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3) 傷寒學의 독립

학과의 독립은 한편으로는 학과의 성숙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과를 설치함으로써 그 학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한학은 송대에 처음 의학교육과정에 들어간 뒤에 명대에 이르러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첫째 의학을 13과로 나누고 상한은 독립된 과가 되었다. 태의원과 지방의학에 의료와 교학에 있어서 상한은 독립된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 독립된 과로 만든 이러한 조치는 상한학 발전에 상당한 추동작용을 일으켰다. 둘째 상한의 학술유파가 증가하였다. 송대에 상한을 의학교육에 설치한 이래로 상한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양송에서 금원까지 『傷寒論』을 연구하여 일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70~80家에 달하였다. 『經籍訪古志』에서 송대 의가인 王寔, 朱肱, 韓祇和, 許叔微 등은 모두 仲景을 받들어 확충하였고, 常器之, 龐安時, 郭雍 세 의가는 가장 정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금원시기 成無己, 王好古의 영향이 가장 컸다. 宋金元의 의가들이 개척한 『상한론』를 연구하는 풍조는 명대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 상한학파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편차에 따라 말하자면 方有執, 喩昌을 대표로 하는 三綱鼎立派와 張遂辰 등을 대표로 하는 維護舊論派가 출현하였다. 청대에는 또 새로운 학파들이 탄생하였다. 요컨대 상한학파의 발전은 상한이 독립된 과로 설치된 것과 관계가 없지 않다.

5. 明과 朝鮮의 교류

조선은 開國初 부터 명나라와 醫人, 醫書 및 약물

7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孝宗弘治實錄 卷2 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10.

www.kci.go.kr

등의 교류가 계속 되었으나, 건국 직후에는 明과의 국교 관계가 그렇게 빈번치 아니하였다. 정치가 안정된 세종 이후부터 明과의 사절 왕래가 더욱 잦아지게 되었고 그때마다 중국과 의학교류가 이루어졌다.

보통 사신의 왕래로 중국에 조공을 하고 醫書와 藥材를 받았는데 그것은 실리 외교의 한 측면이었다. 그리고 따로 중국에서 약재를 구입한 것은 1406년(태종 6)부터 使行마다 醫員 1인을 보내 중국 약재를 구입하게 한 것이 시작이며[75] 1423년(세종 5)부터는 약재 구입의 정확을 기하고자 使行마다 典醫監, 惠民局, 濟生院으로 하여금 직접 가서 중국 약재를 구입하게 하였다[76]. 가장 수량이 많은 것으로는 太宗 元年 9월에 우리나라에 麻를 교역한 대가로서 약재를 실은 수레가 150량이나 되었고, 同 6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銅佛을 보내 준 사례로서 犀角, 片腦, 沈香, 白花蛇, 朱砂 등 약재 18味를 보내 온 것이 있다.

중국과 교역한 주요 약재는, 우리나라로부터 明에 가져 간 것으로는 人蔘, 松子 등을 들 수 있고, 明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 온 약재는 전통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것들뿐만 아니라 명나라 산이 아니고, 南方熱帶 및 중앙아시아에서 산출 되는 犀角 및 각종 香藥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약품들은 인도양을 거쳐 말레이 반도를 돌아 중국에 수입된 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중계한 것이다. 반대로 일본이나 琉璃(오키나와)로부터 수입된 것을 明과의 물자교역에 이용키도 하였다.

醫書는 고려로부터 전해 내려온 唐·宋·元의 醫書들이 건국과 함께 계승되었는데 이러한 醫書들이 태종 12년 8월에 忠州史庫로부터 春秋館에 이장되었다. 醫書의 수입은 명나라에 사절을 보낼 때에 수입되었다. 수입된 의서의 목록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太宗 3년 9월에 右政丞 成石磷 등이 명에 갔을 때에 明帝에게 서적과 의사를 청하였으며, 同 15년 4월에는 명나라에 가는 사절 尹吳眞을 시켜『鍼灸銅 人經』을 청하였더니, 그해 10월에 明의 太醫院에 彩畵로 그린 鍼灸銅人仰伏 二福을 복사하여 보내와 12월에 그 銅人圖를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同 17년 12월에 庾順道를 使臣의 書狀官으로서 明에 보내어 醫·卜書를 배우게 하고 다시 醫方, 五行, 卜書, 捻金冊을 易換케 하였으며, 同 18년 4월에 使節 延嗣宗 등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에 교환한 의서와 약재들을 바치기도 하였기에 당시 상당한 醫方書들이 오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鄕藥集成方』과『醫方類聚』의 인용서들과 여러 차례 간행된 중국의 서들의 목록을 통하여 의서의 수입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세종 27년 10월에 성립된『醫方類聚』중에 明初의 의서로서『醫經小學』,『玉機微義』,『活人心方』,『壽域神方』들이 열거되었으며, 세조 3년 11월에도 明에 가는 使節의 從事官 仔元濬에게 藝文官에 書籍, 醫方, 佛書를 많이 구입해 오게 하였다. 성종 때의 간행본에도 明初의『周府袖珍方』을 비롯한 여러 방서들을 들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학의 수입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한편 중국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중국에 가서 배워오기도 하였다. 태종 3년 9월에 사절로서 成石磷이 명나라에 가서 明帝에게 의사를 청하였으며, 同 6년 정월에 명나라에 사절이 갈 때에는 의원 1인을 딸려 보내어 약재를 무역케 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상당한 醫人들이 명나라를 왕래하였다. 同 7년 9월에 세자 禔가 寶正使로서 明에 갈 때에도 判典醫監事 楊弘達이 수행하였다.

특히 세종 때는 향약의 연구를 위하여 중국에 의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世宗 3년 10월에 藥理에 정밀한 黃子厚를 副使로서 明에 보내어 본국에서 나지 않는 약재를 널리 구하게 하였으며, 5년 3월에는 大護軍 金乙亥, 司宰副正 盧重禮, 前敎授官 朴堉 등을 明에 보내어 본 국산 약재와 唐藥을 비교·감별케 하였다.

7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太宗實錄 卷11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347. 太宗 6년 正月 己未條 "自今 每當使臣入朝之時 以醫員一人 於押物打角夫中差遣貿易藥材".

7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世宗實錄 卷20明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p.534. 世宗 5년 4월 丙辰條 "戶曹據典醫監·惠民局·濟生院呈啓 今謝恩使行次 黑麻布五匹入送 唐藥材貿易 自今 每入朝行次 以爲恒式".

www.kci.go.kr

약재뿐 아니라 同 15년 11월에는 明使를 수행해 온 의사 毛琰에게 盧重禮를 보내어 왕의 病症을 질문하였으며, 同 20년 6월에는 왕의 病症을 具錄하여 그 方藥을 遼東醫 및 北京御醫에게 하문하게 하였으며, 同 23년 11월에는 明에 가는 사절을 시켜 왕의 眼病에 대한 약을 明의 禮部尙書 胡濙에게 하문하였는데, 濙이 明帝에게 청하여 약을 하사하였다. 胡濙은 儒醫이다. 세종 32년 2월에는 中樞院事 李繪 등이 明에서 돌아올 때에 明帝가 王의 宿疾을 알고 醫方과 또한 그 병에 해당되는 약재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태종 5년 9월에 明使와 함께 鄭昇과 金甫가 來朝하였는데, 昇은 松苗를 구하러 오고 甫는 醫藥의 治를 받으러 오기도 했음을 추증할 수 있다. 세종 7년 7월에는 明의 사절을 따라온 太醫 張本立과 遼東醫人 河讓에게 王病을 진찰하고 國醫와 함께 약방을 상의케 하였으며, 동 9년 6월에는 王이 편안치 못하여 元閔生을 시켜 頭目醫人 王賢에게 약을 하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조선 전기에 明과의 의학교류를 살펴보면 使行마다 약재의 교역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세종 때에는 향약연구를 위한 의사의 파견이 두드러졌고 그 이후로는 중국의서의 간행을 목적으로 한 醫書의 수입이 많았다. 또한 두 나라 醫人들 사이의 質問, 傳習 또는 의서들의 飜刻으로 인하여 성종 및 중종 때부터 더욱 그 발전을 보게 되어 16세기에는 明醫書의 중간본들이 의과시험 및 의학취재 등의 講書로 널리 이용 되었다.

6. 명대 의정에 대한 평가

1) 명대 의정에 대한 평가

명대 의약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왕조사회에서 통치자의 일반적인 의약에 대한 가치규율에 부합한다. 즉 의약보건은 황제, 황실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대신과 관료이며 그 다음이 군대고 그 다음 차례가 백성이다. 그러나 다른 왕조에 비해 명대에는 군진의료와 구휼방면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유행병의 예방치료와 빈민에 대해 의약으로 구휼하는 방면에도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지방의학교육이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민중의 의료를 점차 확대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명대에 신선과 무술을 비판하여 그 불법 활동을 제재하고 선대 의가에 대해 제사를 올려 의약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조치들은 진보된 것이다. 이는 의학발전의 사상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민중의 의약관념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명대에 실행한 世醫제도는 의생을 안정시키고 家傳의 의료경험을 전수하고 누적시켜 의생의 행정관리 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명대는 의생에 대한 대우가 낮았고 籍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헌납으로 의관을 보임하는 제도 등을 실행한 것은 모두 의생의 의욕을 좌절시켰다. 이 때문에 명대에는 의생이 도피하는 특유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의학발전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의제도의 실행으로 儒士와 文人이 의생의 대열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 의생의 소질이 점차 낮아져 의학에 대해 말하자면 일종의 손실이었다. 명대 정부는 대량의 약재를 공납 받고 수입하여 본초를 修訂하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약재가 사장되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등의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 특히 약물로 봉급을 대신한 제도는 관리의 대우를 저하시켰고 또한 약물관리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는 의학발전에 부정적인 조치이다. 역병예방과 의약구휼은 한 걸음 진전된 것이지만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역시 충분치가 못하여 근본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지 못하였다. 지방의학교육은 다소 발전하였지만 중앙의학교육은 당송시대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의학교육의 총체적인 방면에서 보면 당송시대에 비해 손색이 있었다. 군대의 의약조직은 상대적으로 건전하였고 의학보건의 구휼작업도 진보가 있었다.

의약조직기구 방면에 있어서 명대에는 태의원이 관리의 중추를 맡고 각 기관과 태의원 사이에 일정한 연계를 맺고 있었다. 명대 의전에 의약기구의 예속이 각기 달라 상호간의 연계가 박약했던 현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의약관리업무에 있어서 진보이다. 그러나 북경과 남경에 태의원을 각각 설치한 것은 불필요한 조치였다. 요컨대 명대 의정은 당송의

www.kci.go.kr

의정경험을 계승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遼·金·元의 의정에서 유익한 부분을 흡수하여 집권 성격을 가진 유기적인 의정체계를 만들었다.

2) 명대 의정의 형성된 원인

(1) 정치제도

명조는 승상제도와 원대 이래의 行中書省제도를 폐지하고 황제의 권력을 대대적으로 강화시켜 중국 역사상 절대전제주의의 군주정체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절대 집권사상에 입각하여 각 분야의 관리도 점차 통일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의정 설치 역시 여러 상부기관에 예속되어 상호 연계가 없었던 것에서 점차 서로 협조하고 통일된 제약의 궤도로 향하여 유기적이고 집권성격을 갖춘 의정체계가 만들어졌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최고 의정관리기구인 태의원이 궁정과 지방의약조직기구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하였고 전국 각 방면의 의생들에 대해 통일적인 선발, 파견, 징벌하는 권력을 가졌다. 세의제도는 명대에 직업에 따라 주민대장에 등록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업을 세습하는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이다. 또 헌납을 통하여 의관에 보임되는 현상도 모든 사회에 헌납을 통하여 관리에 보임하는 풍습의 영향으로 출현한 것이다. 명대는 의생에 대한 대우가 매우 낮은 것은 통치자가 의생의 경제적 지위의 확립에 대해 어떠한 혜택 조치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혹독했던 것 이외에 관리들의 녹봉이 보편적으로 낮아진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顧炎武는『日知錄』에서 자고로 百官의 녹봉이 이와 같이 박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명대 과거제도의 발전은 의관, 의생이 고시로 임용되고 파면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2) 경제적 요인

명조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屯田制, 황무지 개간, 호족과 지주의 탄압 등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고 또한 수공업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업적인 무역을 허가하였다. 이는 농업, 상업, 수공업을 급속히 회복시키고 발전시켰다. 사회생산력은 원래 있었던 것을 기초로 대대적으로 진전하였다. 명대 중기에는 동남 연안에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는 자본주의가 이미 싹트고 있었다. 조선업의 발달로 鄭和가 7차례나 서양을 다녀와 대외무역도 크게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외국약물의 대량 수입은 약물품종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명대 본초문헌 정리에 조건을 제공하였다. 항해업의 발달로 해군이 창설되고 동시에 海軍軍醫의 발전도 촉진시켰다. 명대에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여 사회의 의약구휼 특히 군사에 대한 의약구휼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동시에 유행병의 예방치료와 역병에 걸린 백성을 구제하는데 물질적인 기반이 되었다.

(3) 사상문화적인 요인

명대 16명의 황제들은 神仙巫術로 장생을 구하는 방면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여 신선을 찾고 仙藥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명대의학은 비교적 순리적으로 건전한 길을 따라 발전할 수 있었다. 명대 황제들이 귀신을 믿지 않은 원인은 그들이 처해있던 시대 및 지연과학문화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명대가 처해있던 14세기 하반기에서 17세기 상반기까지는 자연과학이 부단하게 발전하던 시기였다. 4대 발명을 계기로 자연과학이 발전한 조류는 명대 황제들에게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다. 이밖에 유럽의 문예부흥운동 이후 서양과학 등 선진사상과 자연과학지식이 계속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는 서양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잇달아 들어와 포교활동을 하였다. 1582년에 벨기에 사람인 南懷仁 등이 중국에 들어와 사대부인 徐光啓, 李之藻 등과 교류를 가졌고 또한 萬曆 이후에는 몇몇 황제들의 눈에 들기도 하였다. 마테오리치와 서광계는『幾何原本』,『測量法義』,『泰西水法』 등 서방과학서를 공동으로 번역하여 과학기술지식을 중국에 전파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이외에 마테오리치는 의학과 관련된『西國記法』을 번역하였는데 이는 중국에 들어온 의학과 관련된 최초의 책이다. 1621년에 중국으로 온 스위스 사람인 鄧玉函은 力學을 전파하고『人身槪說

www.kci.go.kr

』 2권을 번역하였으며 또한 마카오에서 의술을 행하고 중국본초를 연구하여 중국과 서방문화를 교류시켰다. 명대 황제들은 자연과학문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신선무술 등의 사설에 대해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秦始皇이나 漢武帝처럼 장생불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 이밖에 이 시기에 국민의 과학문화 수준도 어느 정도 제고되어 신선무술의 활동이 점차 축소되었고 의정발전을 막는 요소가 줄어들었다.

Ⅲ. 結 論

논자는 본론의 간단한 분석과 조사를 통하여 明代의 醫藥政策, 醫政에 관한 管理, 醫藥政策과 醫學發展과의 關系, 醫政에 대한 評價에 관한 윤곽을 아래의 몇 가지측면으로 요약하였다.

1. 明代의 醫藥政策에 있어, 正反 두 측면의 경험과 교훈이 있는데, 신선·巫術을 비판하고 그 불법활동을 제재한 방면에 있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동시에 명 정부는 先醫에게 제사를 지내는 형식으로 의약의 영향을 선전 확대하여 민중의 의약관념을 강화시킴으로써 의약발전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이 이외에 명대에는 唐宋의 의약율령을 계승한 것을 기초로 시대적 특징과 결합시켜 왕조사회의 의약율령을 발전시켰으며 역병유행병 예방에도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 새로운 경험을 총결하였다. 특히 明朝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발전으로 정부가 채택한 조치들도 비교적 효과적이었다. 이를테면 시체와 유골을 매장하였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方書를 편찬하여 반포하였고, 또한 판에 기록해서 村坊의 요지에 똑똑히 개시하였고, 坊을 설치하여 격리시켰고, 관리를 파견해서 시찰하며 약을 나누어주었고, 조세의 감면과 관을 하사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므로, 이 시기 역병의 유행빈도수가 많이 줄었고 유행하는 범위도 축소된 사업 등은 성공적 이었다.

그러나 명대 의약정책 역시 역사적인 한계가 있어 일부 정책조치는 의학발전에 소극적인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의생의 대우가 낮았고 엄격한 세의제도는 실력이 있으면서 중용되지 못한 의생들로 하여금 몰래 도망치거나 은거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력은 없지만 재물을 헌납한 의생은 높은 지위를 얻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의생들의 의욕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의학발전에 소극적인 작용을 낳았다. 이밖에 약물을 대량으로 공납 받고 수입하여 약재를 쌓아두기도 하였다. 약품으로 봉급을 대신함으로써 관원의 대우를 낮추었고 약재를 지나치게 낭비시켰다. 요컨대 명대 의약정책은 성공한 경험도 있었지만 실패한 교훈도 있었다.

2. 醫政에 관한 管理에 있어, 明朝는 唐宋의 의정경험을 계승하고 遼·金·元시기에 의약기구를 설치한 것을 지양하여 집권의 성격을 띤 새로운 의정구조를 만들었으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대 의정 관리의 중추적인 太醫院, 御藥院, 惠民局 등의 기관들은 일정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었고, 또한 서로 제약하고 있어 의생들은 모두 태의원에서 통일적으로 파견하였다. 또한 태의원이 전국의 의정, 의료, 의학교육 등의 기능을 모두 관장하여 당송시대에 각 의약기구들이 여러 상부기관에 예속되어 서로 협조적이지 못했던 폐단을 극복함으로써 의정에서도 집권적인 관리의 성격을 체현하였다.

둘째. 명대 의학교육은 중앙에 전문 의약교육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의학생을 양성하는 임무는 태의원에서 겸하여 관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世醫제도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의생의 교육은 주로 家傳 世業이었기에, 다른 시대에 비하여 중앙교육이 퇴조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각 府, 州, 縣에 기본적으로 지역의 의정 관리, 의료 관리 및 의학교육 등 3가지 직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지방의학교육이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민중의 의료를 점차 확대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명대 군대는 京軍, 內地軍, 邊境衛所軍으로 나누고 이러한 군대에 모두 정식의 軍醫 조직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한 고정된 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

www.kci.go.kr

라 명대 초기에 太祖, 成祖는 군사의료와 구휼조치를 강화하였고 이후 황제들이 본받았다. 요컨대 군대의 의약조직이 보다 건전해져 관리와 병사의 의료수준이 상당히 제고되었다. 특히 영락시기 군사의 구휼사업은 明朝뿐만 아니라 모든 왕조사회에 있어서 두드러졌다.

넷째. 明代의 궁정의료에 있어 太醫院에서는 황제를 위한 禦藥局, 禦藥房을 엄격히 관리하였고, 황후와 비빈이 요양하는 安樂堂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태자를 위한 典藥局과 전국 각지에 分封된 왕자를 위한 것으로 良醫所를 설치하는 황실 의료를 행하였다

또한 明代의 민중의료에 있어 惠民藥局이 빈민 의료를 위해 설치된 기구였고, 사회적인 의약 구휼 사업으로 養濟院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빈곤하고 병든 자들을 구제한 것 이외에, 漏澤園 등을 설치하여 죽어서 장례를 치러줄 친족이 없고 들판에 버려진 유해와 유골 등에 대해 매장을 실시하였다.

3. 醫藥政策과 醫學發展과의 關系를 세 가지 방면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世醫제도의 공헌에 있어, 명대는 원대에 醫戶를 관리한 경험을 계승하여 제정한 世醫제도와 함부로 改籍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은 의사들을 안정시켰다. 그 결과 가족의 의료경험이 부단히 총결되어 제고 되었으며, 數代를 이은 醫案이 증가되었고, 辨證論治가 부단하게 발전되었는데, 楊繼洲의 『鍼灸大成』, 江瓘의 父子의 『名醫類案』, 張三錫의 治法이 사례에 해당된다. 이러한 世醫제도는 학문발전에 있어 편협한 국한성도 있었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국부적인 의료경험이 점차 학술유파를 형성하였다. 즉 薛己, 張景嶽을 대표로 하는 溫補學派, 陳實功을 대표로 하는 外科正宗派, 명대에 싹터서 청대 의가인 王惟德이 집대성한 外科全生派, 청대 高秉鈞을 대표로 하는 外科心得派 등의 학술유파를 탄생시켜 학술논쟁을 촉진함으로써 의학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였다.

둘째. 본초학의 발전에 있어, 明代에 편찬된 本草方書로는 朱橚의 『救荒本草』, 徐彦純의 『本草發揮』, 王綸의 『本草集要』, 陣嘉謨의 『本草蒙荃』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李時珍의 『本草綱目』이다. 여기에 수재된 약물은 모두 1892종이며 附方이 10000여 개이며, 本書는 本草學 著作 가운데 不朽의 名作이다. 또한 명대에 개인의 본초저작이 증가된 것은 정부의 영향이 아니며 당시 약물이 대량으로 공납되었고, 특히 의가들은 다량의 외국 약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약물의 품종이 증가는 연구를 제고시키게 되었다.

셋째. 傷寒學의 독립에 있어, 傷寒學은 송대에 처음 의학교육과정에 편입된 다음 명대에 이르러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즉 醫學 13科 가운데 상한은 독립된 1과의 分科로 간주되어 醫療와 敎學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니, 이러한 조치는 傷寒學發展에 推動作用을 일으켰다. 또한 宋金元의 의가들이 개척한 『상한론』를 연구하는 풍조는 명대에 이르기까지 상한학파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편차에 따라 말하자면 方有執, 喩昌을 대표로 하는 三綱鼎立派와 張遂辰 등을 대표로 하는 維護舊論派가 출현하였다.

4. 明代 醫政을 評價하자면, 이시기는 봉건왕조사회의 말기단계이며 이시기에 봉건정치는 이미 절대전제주의 수준에 다다랐다. 집권사상의 영향아래 태의원을 중심으로 삼아 유기적인 의정 관리 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신선과 妖巫를 비판하고 의약관념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면이 출현하였다. 지방의 학교육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돌림병의 예방치료 및 의약구제 등의 작업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명대의 의정은 당·송·원나라 시대 의정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어떤 방면은 다소 발전시켜나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출 난 공적은 얼마 없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관에 박힌 듯한 세의제도, 미비한 의생의 대우 및 捐納하여 의관을 임명하고 또 약품으로 봉급을 대신하는 등의 부정적인 조치들은 의학사업의 발전에 모두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www.kci.go.kr

Ⅳ. 參考文獻

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太宗永樂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宣宗宣德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英宗正統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宣宗成化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孝宗弘治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武宗正德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嘉宗天啓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世宗嘉靖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9.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太祖洪武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1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神宗萬曆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1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太宗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1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明實錄·世宗實錄. 北京. 黃山書社. 2005.
13.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 一中社. 2004.
14.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15. 李經緯 林昭庚 主編. 中國醫學通史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1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17. 李良松 郭洪濤 編著. 中國傳統文化與醫學. 廈門大學出版社. 1990.
18. 王漢昌. 中國古代政治制度史略. 北京. 人民出版社. 1990.
19. 張廷玉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明史.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20. 徐溥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明會典.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21. 林堯俞 等纂修. 俞汝楫 等編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禮部志稿.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22. 金基郁 朴炫局. 遼金元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7. 20(1).
23. 朴炫局 金基郁 鄭城采. 隋唐五代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4).
24. 金基郁 朴炫局 金在哲. 兩宋時期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3).
25. 金基郁 朴炫局 朴晶禧 梁峻. 秦漢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2).
26. 朴炫局 金基郁 朴宣柱 梁峻. 魏晉南北朝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2).

www.kci.go.kr